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2012. 12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원종학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형민 공인회계사

홍성열 공인회계사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11
1. 개관	11
가. 세수 및 실효세율	12
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자와 납부액	15
2.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	17
가. 개요 및 동향	17
3. 상속세·증여세의 산정방식	19
가. 상속세	19
나. 증여세	21
다. 기업상속 관련 세제	23
III.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30
1. 미국	30
가. 개요	30
나. 유산세·증여세의 산정방식	36
2. 일본	47
가. 개요 및 동향	47
나. 상속세·증여세의 산정방식	54
3. 영국	65
가. 개요 및 동향	65
나. 상속세·증여로 인한 자본이득세의 산정방식	68

4. 독일	81
가. 개요 및 동향	81
나. 상속세 · 증여세의 산정방식	83
다. 세수 및 실효세율	90
라. 면세점 및 공제제도	92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94
1. 국제비교	94
가. 상속 · 증여세 일반사항	94
나. 상속 · 증여세 과세체계(과세구간, 면세점 및 세율체계 등)	97
다. 상속 · 증여세 주요 공제제도	103
2. 시사점	109
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개편방향	109
나. 생전증여에 대한 세제지원	110
다. 기업승계 지원제도	112
라. 배우자에 대한 상속 · 증여 시의 공제혜택	113
마. 물가상승 반영에 따른 공제금액의 연동	114
바. 상속 시 기부 활성화 방안	114
참고문헌	116

표 목 차

〈표 II -1〉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비중	12
〈표 II -2〉 상속세 및 증여세 1인당 세부담(산출세액 및 결정세율 기준)	14
〈표 II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실효세율	15
〈표 II -4〉 상속세 과세자 수와 상속재산가액	16
〈표 II -5〉 증여세 과세자 수와 상속재산가액	16
〈표 II -6〉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17
〈표 II -7〉 2009년 이후 주요 개정사항	18
〈표 II -8〉 상속세 과세체계	19
〈표 II -9〉 각종 상속공제	20
〈표 II -10〉 상속세율(2012년 현재)	20
〈표 II -11〉 증여세 과세체계	21
〈표 II -12〉 각종 증여재산공제	22
〈표 II -13〉 증여세율(2012년 현재)	22
〈표 II -14〉 기업상속세제 개요	23
〈표 II -15〉 기업상속공제제도의 연혁	24
〈표 II -16〉 기업상속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요건	25
〈표 II -17〉 영농상속공제금액 연혁	27
〈표 III -1〉 유산세 및 증여세와 세대생략세 면세점 및 최고세율 추이	34
〈표 III -2〉 유산세 및 증여세 통합세액공제	34
〈표 III -3〉 미국의 유산세 및 증여세 세수 및 비중	36
〈표 III -4〉 유산세 과세체계	37
〈표 III -5〉 유산세 및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2012년 현재)	41

〈표 III-6〉 증여세 과세체계	44
〈표 III-7〉 일본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및 비중	51
〈표 III-8〉 일본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실효세율	52
〈표 III-9〉 일본 상속세법 개정추이	53
〈표 III-10〉 상속세 과세체계	54
〈표 III-11〉 상속세의 세율구조(2012년 현재)	58
〈표 III-12〉 역년과세방식 증여세 과세체계	61
〈표 III-13〉 증여세의 세율구조(2012년 현재)	64
〈표 III-14〉 영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및 세수비중	67
〈표 III-15〉 영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1인당 세부담	68
〈표 III-16〉 영국의 상속세 과세체계	69
〈표 III-17〉 영국의 상속세 면세점 추이	70
〈표 III-18〉 영국의 사업자산 및 농업자산 공제제도 개요	72
〈표 III-19〉 사업자산공제의 자산유형별 감면율	74
〈표 III-20〉 농업자산공제의 조건에 따른 감면율	75
〈표 III-21〉 영국의 상속세 적용이자율의 변동	76
〈표 III-22〉 영국의 증여세 과세체계	78
〈표 III-23〉 2009년 등급별 적용 세율	82
〈표 III-24〉 2010, 2011, 2012년 등급별 적용 세율	82
〈표 III-25〉 독일의 상속세 과세체계	83
〈표 III-26〉 독일의 상속 시 물적공제 분석	84
〈표 III-27〉 독일의 사업자산공제	86
〈표 III-28〉 독일의 증여세 과세체계	88
〈표 III-29〉 독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및 세수비중	90
〈표 III-30〉 독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1인당 세부담	91
〈표 III-31〉 독일의 연도별 상속세 및 증여세 실효세율 추이	91
〈표 III-32〉 독일의 인적공제 금액	92
〈표 III-33〉 독일의 특별인적공제금액(생계비)	93

〈표 III-34〉 독일의 물적공제 분석.....	93
〈표 IV-1〉 국제비교표 1.....	96
〈표 IV-2〉 국제비교표 2.....	101
〈표 IV-3〉 국제비교표 3.....	106

I. 서론

- 상속세는 사망을 과세시기로 하여 ‘사망자의 유산’ 또는 ‘사망자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임
 - 따라서 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은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 불로소득이므로 필요경비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 부의 사회적 환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세율도 높은 편임

- 증여세는 증여계약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임
 - 증여제도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제도로,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생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상속세의 보완세라고 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나, 상속 및 증여는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사회정의 차원의 부의 공평 분배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상속·증여세 제도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도구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는 2003년 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제외하고는 체계상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임
 - 2003년 말 변칙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바 있음
 -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은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50%)이고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26%)의 2배 수준인 채로 10년 넘게 동일한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개방경제에서 타국보다 높은 상속세율 유지 시 국부의 해외유출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해 등이 우려되어 2008년 정부는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하였으나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음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 개편 시 참고하기 위하여,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현행 제도 및 최근 동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의 현행 제도상의 다음의 내용을 분석함
 - 상속·증여세의 과세구간 및 구간별 세율
 - 상속·증여세 관련 공제제도(기초공제,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 기타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 최근 5년간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개편동향을 파악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제I장에서부터 제IV장까지 이루어짐

- 제I장에서는 서론을 기술하고, 제II장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 현황을 정리함
- 제III장에서는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4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 동향 및 현황에 대해 상세히 정리함
-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주요 항목별 규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Ⅱ.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1. 개관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형은 유산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유산과세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과세방식으로, 상속대상 재산을 상속인에게 분할하기 이전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임
 - 취득과세형은 각각의 상속인에게 분할한 후 분할된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임

-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의무자는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인, 유증 및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수유자임

-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재산 모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가지고 비거주자는 국내재산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가짐

- 증여세는 취득과세형 제도로써 수증자가 무상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서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가지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취득재산의 소재가 국내인 경우에 납세의무를 가짐
 - 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가. 세수 및 실효세율

- 국세 중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일시적으로 1.43%로 낮아졌으나 2010년 2011년은 1.73%로 다시 회복됨
- 최근 3년간 상속세의 증가율은 국세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절대금액 또한 정체하고 있음
 - 2009년 이후 도입된 동거주택 상속제도와 금액이 크게 확대된 가업상속공제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II-1〉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비중

(단위: 억원, %)

	국세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국세 비중	금액	증가율	국세 비중	금액	국세 비중
2000	929,347		4,487		0.48	5,401		0.58	9,888	1.06
2001	957,928	3.1	4,299	-4.2	0.45	5,184	-4.0	0.54	9,483	0.99
2002	1,039,678	8.5	3,978	-7.5	0.38	4,583	-11.6	0.44	8,561	0.82
2003	1,146,640	10.3	4,853	22.0	0.42	8,297	81.0	0.72	13,150	1.15
2004	1,177,957	2.7	5,883	21.2	0.50	11,199	35.0	0.95	17,082	1.45
2005	1,274,657	8.2	7,019	19.3	0.55	11,708	4.5	0.92	18,727	1.47
2006	1,380,443	8.3	8,676	23.6	0.63	15,216	30.0	1.10	23,892	1.73
2007	1,614,591	17.0	10,589	22.0	0.66	17,829	17.2	1.10	28,418	1.76
2008	1,673,060	3.6	11,817	11.6	0.71	15,953	-10.5	0.95	27,770	1.66
2009	1,645,407	-1.7	12,206	3.3	0.74	12,096	-24.2	0.74	24,302	1.48
2010	1,777,184	8.0	12,028	-1.5	0.68	18,733	54.8	1.05	30,761	1.73
2011	1,923,812	8.3	12,586	4.6	0.65	20,740	10.7	1.08	33,326	1.73
평균		6.9		12.4			13.0			
2009년 이후 3년 평균		4.9		2.13			13.7			1.6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중 「국세청 소관 세입현황」, 2012

- 2009년의 일시적인 증여세액 대폭 감소는 정부가 증여세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여를 미루고 있다가 2010년에 증여가 몰리게 되어 2010년의 증가율이 높아짐¹⁾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산의 장부가치가 떨어지면서 부유층에서 자산가격이 경기 침체로 인하여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하여 절세를 할 유인이 높아져 증여 금액이 상승하고 있음
 - 2009년 이후 증여세 세율이 높아지거나 공제의 축소 등의 증여세 강화 요인의 정책 방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 재산가액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생전 증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평균수명의 연장은 기존처럼 상속에 의해 재산을 물려줄 경우 자녀들의 연령 또한 고령이 되는 상황이므로 자녀들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경제적 원조가 되기 위하여 증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09년 이후 상속세의 경우에는 1인당 결정 세액과 산출세액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증여세의 경우 1인당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이 과거 11년 동안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2009년 이후 상속세 쪽에서는 기업상속공제의 금액 확대와 요건 완화 및 동거주택 공제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증여세 쪽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며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파악됨

1) http://mone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102&total_id=9716413

〈표 II-2〉 상속세 및 증여세 1인당 세부담(산출세액 및 결정세율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상속세					증여세				
	산출세액	결정세액	피상속인 수	1인당 산출세액	1인당 결정세액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세자 수	1인당 산출세액	1인당 결정세액
2000	639,102	513,720	1,389	460	370	1,549,591	583,998	37,165	42	16
2001	449,280	401,147	1,982	227	202	1,591,307	654,135	49,645	32	13
2002	583,178	473,674	1,661	351	285	1,072,792	656,930	55,049	19	12
2003	534,966	462,331	1,720	311	269	1,586,499	958,051	54,441	29	18
2004	1,171,00	953,973	1,808	648	528	2,275,017	1,521,199	103,024	22	15
2005	1,032,624	725,607	1,816	569	400	2,957,755	1,394,547	62,925	47	22
2006	931,919	757,582	2,221	420	341	3,021,348	1,817,124	88,279	34	21
2007	1,390,659	1,166,555	2,603	534	448	4,058,526	2,794,586	121,471	33	23
2008	1,584,400	1,332,859	3,997	396	333	5,458,791	3,130,985	97,277	56	32
2009	1,971,412	1,546,448	4,340	454	356	3,020,562	2,036,715	96,654	31	21
2010	1,526,624	1,221,672	4,547	336	267	4,943,980	2,993,645	96,623	51	31
2011	1,902,263	1,554,483	5,720	333	272	4,696,587	3,566,689	126,409	37	28

주: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재산가액 - 공제금액, 공제금액: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기타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중 「상속세 결정현황」, 2012, 2004

□ 2009년 이후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은 11년간의 평균 실효세율과 크게 차이가
없음

○ 세율과 공제금액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실효세율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음

〈표 II-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실효세율

(단위: 백만원, %)

	상속세				증여세			
	총상속 재산가액 ¹⁾	과세표준	산출세액	실효 세율 ²⁾	증여재산 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실효 세율 ²⁾
2000	3,413,441	1,865,282	639,102	34	3,164,580	4,939,427	1,549,591	31
2001	3,081,159	1,433,983	449,280	31	3,692,653	5,532,642	1,591,307	29
2002	2,993,597	1,767,097	583,178	33	4,166,031	4,435,486	1,072,792	24
2003	3,127,966	1,541,818	534,966	35	5,383,646	6,156,833	1,586,499	26
2004	4,791,927	2,875,659	1,171,007	41	10,283,326	10,171,371	2,275,017	22
2005	3,799,637	2,645,835	1,032,624	39	7,856,396	10,239,632	2,957,755	29
2006	4,159,079	2,510,410	931,919	37	10,790,623	12,282,063	3,021,348	25
2007	5,794,589	3,616,719	1,390,659	38	15,168,346	16,019,612	4,058,526	25
2008	7,502,306	4,413,307	1,584,400	36	13,711,175	19,168,574	5,458,791	28
2009	8,573,480	5,336,628	1,971,412	37	11,056,305	12,299,985	3,020,562	25
2010	7,645,270	4,397,852	1,526,624	35	13,066,368	17,873,240	4,943,980	28
2011	8,878,630	5,327,998	1,902,263	35	16,522,404	18,869,566	4,696,587	25
평균				36				26

주: 1) 총상속재산가액은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합계임(비과세대상은 제외됨)

추정상속재산가액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용도 미입증액임

2) 실효세율 = 산출세액/과세표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중 「상속세 결정현황」, 「증여세 결정현황」, 2012, 2004

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자와 납부액

□ 상속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총 피상속인의 수 276,972명 중 과세 피상속인은 5,720명으로 약 2%에 불과하고 나머지 98%에 달하는 피상속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음

○ 2012년 총 상속재산 중 약 36.4%만이 과세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각종 공제제도 등을 통해 일정 금액에 대하여 면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표 II-4〉 상속세 과세자 수와 상속재산가액

(단위: 명, 백만원, %)

	합계		과세		과세비율	
	피상속인 수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 수	상속재산가액	인원비율	재산가액비율
2006	304,215	17,804,629	2,221	4,736,341	0.73	26.6
2007	355,789	21,103,460	2,603	6,542,861	0.73	31
2008	383,001	19,362,502	3,997	8,635,999	1.04	44.6
2009	288,503	19,805,111	4,340	10,108,267	1.5	51
2010	325,045	24,915,019	4,547	9,019,117	1.4	36.2
2011	276,972	29,253,734	5,720	10,658,798	2.07	36.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중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현황」, 2012

- 증여세제 신고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총 수증인의 수 251,506명 중 과세 수증인은 126,409명으로 50.3%를 차지하며 재산가액 비율은 76%에 이르고 있음
- 상속에 비해서 증여의 경우는 공제액 규모가 훨씬 작고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 공제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상속에 비해 광범위하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II-5〉 증여세 과세자 수와 상속재산가액

(단위: 명, 백만원, %)

	합계		과세		과세비율	
	수증인 수	증여재산가액	수증속인 수	증여재산가액	인원비율	재산가액비율
2007	239,671	23,251,475	121,471	20,030,634	50.7	86.1
2008	228,334	27,295,616	97,277	22,222,037	42.6	81.4
2009	214,665	22,811,040	96,654	15,538,913	45.0	68.1
2010	207,399	28,898,571	96,623	21,498,641	46.6	74.4
2011	251,506	30,321,207	126,409	23,045,350	50.3	76.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중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현황」, 2012

2.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

가. 개요 및 동향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변화 없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
 - 2000년 이후 적용되는 최고세율 구간은 1997~1999년까지 적용되는 구간보다 낮아졌으며 최고세율 또한 5% 상승한 50%로 바뀌면서 부유층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과세정책이 유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연도별 상속·증여세 세율

〈표 II-6〉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단위: %)

1996.12.31 이전		1997.1.1 ~ 1999.12.31		2000.1.1 이후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 상속세					
5천만원 이하	10				
2억 5천만원 이하	20	1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5억 5천만원 이하	3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5억 5천만원 초과	4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 증여세		50억원 이하	40	30억원 이하	40
2천만원 이하	10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1억 5천만원 이하	20				
3억원 이하	30				
3억원 초과	40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1, p. 152

- 우리나라의 2009년 이후 연도별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 우리나라의 2009년 이후 상속·증여세법의 개정의 중요한 주제는 가업상속공제의 급격한 공제범위 확대와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상속 시 동거주택에 대한 공제제도의 도입임

-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기업주들의 요청이 꾸준히 있어 왔으며 실제 그 전의 과세방식으로는 상속 시 대주주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저하되어 왔음
- 부자에 대한 감세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으나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제가 주요국들에서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공제 확대가 이루어져 왔음
-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의 제반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상속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의 저하 현상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짐

〈표 II-7〉 2009년 이후 주요 개정사항

연도	개정사항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상증법 제18조): 비율 상향(20% → 40%), 공제한도 상향(30억 → 60~100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도입(상증법 제23조의2): 상속개시일 전까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 시 5억원 한도로 주택가격의 40% 공제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상증법 시행령 제15조 4항):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사업영위기간의 80%에서 60%로 하향하여 요건을 완화함 ○ 증여재산공제시 직계존비속에 계부와 계모 포함(상증법 제53조)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상증법 제18조, 시행령 제 15조):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조건을 매출 1,500억원 미만의 회사까지 확대, 상장기업의 최대주주지분비율 하향(40% → 30%)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요건 완화(상증법 제23조의2, 시행령 20조의 2): 10년간 동일주택 거주 조건에서 이사를 해도 10년간 동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상증법 제18조 2항 1호): 비율상향(40% → 70%), 공제한도 상향(60~100억원 → 100~300억원), 고용요건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이 상속 후 10년간 상속당시의 1.0배 이상의 고용 유지 조건 추가 ○ 가업상속공제의 재산범위 합리화(상증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대상인 법인의 주식 평가 시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 영농상속공제금액의 확대(상증법 제18조 2항2호): 한도금액 상향(2억 → 5억원)

자료: 『개정세법해설』 2009, 2010, 2011, 2012년, 국세청 법규과

3. 상속세·증여세의 산정방식

가. 상속세

□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표 II-8>에서 보는 바와 같음

<표 II-8> 상속세 과세체계

a. 총상속세 재산가액
- b.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c. 공과금, 장례비, 채무
+ d. 사전증여재산
e. 상속세 과세가액
- f. 감정평가수수료
- g. 각종 상속공제
h. 상속세 과세표준
× i. 누진세율(10%~50%)
j. 산출세액
+ k. 세대생략 할증세액
- l. 세액공제
- m. 연부연납, 물납, 분납
n. 자진납부세액

1) 과세표준의 산정

□ 과세표준의 산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기업상속공제임

〈표 II-9〉 각종 상속공제

	항목	공제내용	한도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자공제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받은 가액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 20세까지의 잔여연수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 75세까지의 잔여연수	최소 5억원, 30억 한도
일괄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Max(가업상속재산 × 70% ¹⁾ , 2억원 ²⁾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150/300억원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5억원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 2,000만원 이하 2,000만원~1억원 1억원 초과	전액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 × 20%	2억원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내 발생한 재해	당해 손실가액	한도 없음
동거주택상속 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주택가액의 40%	5억원

주: 1) 한도 있음

2) 가업상속재산가액 2억원 미달 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1

2) 세율

〈표 II-10〉 상속세율(2012년 현재)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1

3)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증여공제, 문화재 등 징수유예액, 신고세액공제로 이루어짐

4) 신고 및 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함

나. 증여세

〈표 II-11〉 증여세 과세체계

a. 증여재산가액
- b.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등
- c. 채무부담액
d. 증여세과세가액
+ e.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 f. 증여공제
- g. 감정평가수수료
h. 증여세과세표준
× i. 세율
j. 산출세액
+ k. 세대생략 할증세액
- l. 세액공제+세액감면
m. 자진납부할 세액

1) 과세표준의 산정

- 과세표준 산정 시 중요한 증여공제는 인적공제와 조특법 30조의6에 규정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임

〈표 II-12〉 각종 증여재산공제

	공제내용	비고
배우자공제	6억원	10년간 공제금액임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내의 재해 등으로 멸실·훼손된 손실가액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1

- 기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제도는 증여시점에 특례세율(10%)을 적용하였다가 증여자 사망시점에 상속재산에 가산시켜 정상세율로 정산과세하는 것이므로 사망시점까지 납세가 유예되는 제도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규정되어 있으며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 10년 이상 경영을 한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기업관련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에서 5억을 공제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10%의 저율과세로 과세하는 것임

2) 세율

- 상속세와 같음

〈표 II-13〉 증여세율(2012년 현재)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1

3) 세액공제 및 감면

- 세액감면으로는 영농자녀 증여세면제와 문화재 등 징수유예액이 있으며 세액공제로는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가 있음

4) 신고 및 납부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다. 기업상속 관련 세제

- 한국은 기업승계를 장려하고 기업상속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를 위한 대표적인 조세 지원제도로 기업상속공제제도와 영농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표 II-14〉 기업상속세제 개요

구분	근거조항	지원내용
기업상속공제	상증법 §18②	- 공제액: Max(기업상속재산가액의 70%(100억~300억원 한도), 2억원) - 대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 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예외적 사항 있음)
영농상속공제	상증법 §18②	- 공제액: 영농상속재산가액(5억원 한도) - 대상: 피상속인이 농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2년간 영농에 종사한 경우
기업승계주식 증여세저율과세	조특법 §30의6	- 특례내용: 기업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 5억원을 공제한 다음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후 증여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 가산시켜 정상세율로 정산과세 -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기업승계 목적으로 해당 기업 주식을 2013.12.31까지 증여받고 기업을 승계한 경우
연부연납제도	상증법 §71	- 연납기간: ① 상속재산가액 중 기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이 50% 이상: 3년 거치 후 12년간 분납 ② 상속재산가액 중 기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이 50% 미만: 2년 거치 후 5년간 분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제외	조특법 §101	-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 적용 배제(2012.12.31 이전의 상속분까지 한시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1

-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제도는 증여시점에 특례세율(10%)을 적용하였다가 증여자 사망시점에 상속재산에 가산시켜 정상세율로 정산과세하는 것이므로 사망시점까지 납세가 유예되는 제도임

1) 가업상속공제

가) 가업상속 관련 세제

(1) 가업상속공제 도입 배경 및 연혁

- 가업상속공제는 2007년까지는 한도액이 1억원에 그쳤으나 2008년 이후로 기업의 계속적 운영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급격히 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되어 2012년 현재는 300억 까지 달하고 있음
-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 또한 2008년 공제액을 확대 하면서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크게 늘렸으나 10년 이상 경영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는 10년으로 사업영위기간을 축소함

〈표 II-15〉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연혁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공제금액	한도액
1997.1.1 ~ 1998.12.31	5년 이상	1억원	-
1999.1.1 ~ 2007.12.31	5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2008.1.1 ~ 2008.12.31	15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2억 미달은 전액	한도 30억원
2009.1.1 ~ 2011.12.31	10년 이상 ~ 15년 미만	상속재산가액의 40%, 2억 미달은 전액	60억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2012.1.1 이후	10년 이상 ~ 15년 미만	상속재산가액의 70%, 2억 미달은 전액	100억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15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자료: 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2012』, 2012.5.8

나) 적용요건

(1) 피상속인의 요건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려면 피상속인은 ①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과 ②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은 2010년 세법개정 후 2012년까지는 변화가 없음

〈표 II-16〉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요건

사망일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2008.1.1 이후	15년 이상	영업기간 중 80% 이상 재직
2009.1.1 이후	10년 이상	
2010.2.18 이후	상동	① 또는 ② ① 영업기간 중 60% 이상 재직 ②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 재직

자료: 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2012』, 2012.5.8.

(2) 상속인의 요건

- 상속인의 요건은 2013년 현재 네 가지가 있으며 당 기준은 2008년 이후로 변화가 없음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여야 함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함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함
 -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함

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

-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
 - 다만, 중소기업의 업종 기준을 적용할 때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²⁾을 제외하고, 음식점업을 포함하되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함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았으나 2010년 10월 27일 세법개정으로 졸업을 할지라도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이면 적용대상이 됨³⁾
 -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법인이면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임⁴⁾
-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과 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⁵⁾
 - 개인으로서의 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임
 - 법인으로서의 가업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함

라) 사후관리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에서 정하는 사후관리 사항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 상속세 부과 시 공제당시의 금액 전부를 다시 산입하여 재계산하게 됨
 - 추정사유란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

2) 영농상속공제 대상이란 양축, 영어 및 영림업임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2012.2.2 개정으로 상장법인의 지분을 기준이 40%에서 30%로 내려감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임

- 2011년에 새로 도입된 추정사유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10년간 고용을 상속 당시의 1.0배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 고용의 안정성을 법적으로 유지시키려고 함

○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추정하지 않음⁶⁾

2) 영농상속공제

가) 영농상속공제의 도입 배경 및 연혁

-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함)에 종사하는 경우에 상속 재산 중 농지 등에 해당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것임⁷⁾

〈표 II-17〉 영농상속공제금액 연혁

적용기간	대상	공제액
~ 1996.12.30	영농, 양축, 영어 상속인	1억원
	임업상속인	2억원
1997.1.1 ~ 1998.12.31	영농, 양축, 영어, 임업 상속인	2억원
1999.1.1 ~	영농, 양축, 영어, 임업 상속인	영농상속가액 (한도 2억원)
2012.1.1 ~	영농, 양축, 영어, 임업 상속인	영농상속가액 (한도 5억원)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6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나) 적용요건

(1) 피상속인의 요건

- 피상속인은 ① 농지 등의 인접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② 2년간 계속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2) 상속인의 요건

- 영농상속인은 ① 18세 이상이고 ② 2년간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③ 농지 등의 소재지 및 인접지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든 갖춘 자이거나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이어야 함

다) 대상자산

-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①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 징수의 경우도 포함), ② 초지, ③ 산림지, ④ 어선, ⑤ 어업권임

라) 공제액

-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5억원임

마) 사후관리

- 영농상속으로 공제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바) 기업상속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

- 기업상속공제에 있어서 농업 및 임업, 어업 등은 대상 업종 자체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농업 및 임업, 어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에는 해당되나 기업상속공제의 대상에서는 제외됨

Ⅲ.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1. 미국

가. 개요

1) 개관

- 미국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생존 시 혹은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산세(Estate Tax) 또는 증여세(Gift Tax) 또는 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가 부과됨⁸⁾
 - 유산세는 사망자로부터 재산이 이전되는 특권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임
 - 미국에서 유산세는 1916년 개인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바 있음
 - 증여세와 세대생략세의 경우 개인이 유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생전증여 또는 세대생략 이전 방식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할 목적으로 각각 1932년 및 1976년에 도입되었음
 - 증여세는 개인이 생전에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무상(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거래 포함)으로 이전하는 경우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임
 - 세대생략세는 세대를 건너뛴 생전증여의 경우 또는 상속을 통해 세대를 건너 뛰어 유산신탁기금(Trust)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유산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금임

8) 이를 연방 이전세제(Transfer Tax System)라고 함

- 납세의무자는 이전되는 자산의 거래형식에 따라 달리 규정함
 - 유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망시점에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이며, 상속재산관리인(executer) 또는 상속을 받은 자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유산세를 신고·납부함
 -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으나,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⁹⁾
 - 세대생략세를 신고·납부하는 사람은 해당 자산의 성격에 따라 유산신탁기금¹⁰⁾ 관리인(trustee), 증여자 혹은 세대를 생략한 상속인(skip person distributee)이 될 수 있음

2) 주요 변천내용 및 최근의 동향

- 1916년과 1932년에 유산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가 각각 도입된 후, 증여세를 이용한 세금 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1976년에 유산세와 증여세 대한 세율 및 면세범위를 통합하여 운영함
 - 1976년 이전의 증여세는 유산세 세율의 75% 수준이었으므로 생전 증여를 통해 유산세 회피가 가능하였음
 - 이당시 조세개혁법을 통해 도입된 통합세액공제(unified transfer tax credit)는 유산세와 증여세를 일원화하며 생전증여 및 유언에 따른 자산이전에 대하여 단일의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과세체계를 그 목적으로 함
 - 이는 고인이 평생 동안에 걸쳐 증여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상쇄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사망 당시 유산세를 공제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음
- 1976년부터 2001년까지는 세율인하 및 통합세액공제의 인상, 1인당 연간 증여면제가액의 인상, 배우자 공제 한도폐지(1981년), 가업상속공제제도 도입(1997년) 등의 변화

9) IRC Sec.6324(b)

10) 유산신탁기금은 수증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제3자(trustee)에게 신탁하여 보유하게 하는 대리계약으로서 서면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며 유산이나 유산기금에 대한 세금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

가 있었음

- 부시 행정부의 2001년 재정된 ‘경제성장과 세금감면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EGTRRA)’은 2007년까지 유산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의 단계적 인하와, 2010년 유산세와 세대생략세의 잠정적 폐지 등을 규정함
 - 위의 법안은 유산세와 증여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유산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의 점진적 인하
 - 유산세의 통합세액공제(unified transfer tax credit) 인상에 따른 유산세 면세점(applicable exclusion amount)의 증가
 - 2004년 이후부터 유산세와 증여세의 통합세액공제 및 면세점 금액 분리
 - 2010년에 유산세와 세대생략세의 폐지 및 증여세의 존치
 - 2010년의 증여세율은 소득세율 최고수준인 35%로 인하
 - 주세(state tax)로 납부한 사망관련 세액을 세액공제 대신 일반 공제로 허용
 - 자산의 위치에 따른 특별 평가제도 폐지

- ‘경제성장과 세금감면법’은 2010년 12월 말까지 적용하는 한시법으로 후속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산세와 증여세는 2011년부터는 과거의 법률(2001년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Republicans)은 유산세가 이중과세이며 투자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구적인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민주당(Democrats) 및 유산세 폐지 반대론자들은 유산세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며 세수감소와 빈부격차 확대를 이유로 폐지를 반대함

-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12월 17일 ‘세금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 TRUIRCA)’을 입법화함으로써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이었던 2001년의 ‘경제성장과 세금감면법(EGTRRA)’상의 유산세 등의 관련내용을 변경함

- 2009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2010년에는 잠정 폐지되었던 유산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부활하였음
 - 다만 2010년에 사망한 고인의 유산에 대해서는, 유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신 유산의 취득자가 그 유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 관련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이연기준방식(carryover basis)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유산과 관련하여 사망자가 유산을 취득하는 시점과 유산을 상속하는 시점 사이에 발생한 유산의 가치 상승분은 자본이득으로 인식되지 않음
 - 대신에 유산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승계규정이 적용되어 보유한 유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취득가액(adjusted basis)으로 함
- 유산세의 최고세율은 2010년부터 35%로 하며, 면세점은 500만달러로 하되, 2012년의 면세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함
 - 실제 면세점은 2012년에 512만달러로 인상되었음
- 동 개정법에 의하면, 2011년 1월 1일 이후 유산세 산정에 있어서 생존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의 미사용 면세점 금액(unused exclusion amount of their deceased spouses)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세대생략세는 2011년부터 다시 시행되며 적용세율은 35%이며, 면세점은 유산세와 동일함
- 증여세는 2001년의 '경제성장과 세금감면법(EGTRRA)'의 내용대로 2010년에는 최고세율 35% 및 면세점 100만달러를 유지하나, 2011년 이후에는 유산세와 동일한 세율구조, 면세점, 통합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

〈표 Ⅲ-1〉 유산세 및 증여세와 세대생략세 면세점 및 최고세율 추이

(단위: 달러, %)

과세연도	유산세 및 증여세			세대생략이전세	
	기본공제		최고세율 (유산세/증여세)	면세금액	최고세율
	유산세	증여세			
2001	675,000	675,000	55/55	675,000	55
2002	1,000,000	1,000,000	50/50	1,000,000	50
2003	1,000,000	1,000,000	49/49	1,000,000	49
2004	1,500,000	1,000,000	48/48	1,500,000	48
2005	1,500,000	1,000,000	47/47	1,500,000	47
2006	2,000,000	1,000,000	46/46	2,000,000	46
2007	2,000,000	1,000,000	45/45	2,000,000	45
2008	2,000,000	1,000,000	45/45	2,000,000	45
2009	3,500,000	1,000,000	45/45	3,500,000	45
2010	5,000,000 ¹⁾	1,000,000	35/35	폐지	0
2011	5,000,000	5,000,000	35/35	5,000,000	35
2012	5,120,000	5,120,000	35/35	5,120,000	35

주: 1) 2001년 세금감면법(EGTRRA)에 의하여 유산세와 세대생략세의 잠정적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 12월 17일 법 개정으로 유산세 및 세대생략세는 부활함

〈표 Ⅲ-2〉 유산세 및 증여세 통합세액공제

(단위: 달러)

과세연도	유산세	증여세
2001	220,550	220,550
2002	345,800	345,800
2003	345,800	345,800
2004	555,800	345,800
2005	555,800	345,800
2006	780,800	345,800
2007	780,800	345,800
2008	780,800	345,800
2009	1,455,800	345,800
2010	1,730,800 ¹⁾	345,800
2011	1,730,800	1,730,800
2012	1,772,800	1,772,800

주: 1) 2001년 세금감면법(EGTRRA)에 의하여 유산세의 잠정적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 12월 17일 법 개정으로 유산세가 부활함

- 오바마 행정부의 '세금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RUIRJCA)'에 의한 유산세 등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었으나, 2013년 1월 2일 '미국납세자의 세금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이 통과됨으로써 기존 규정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일부 규정이 개정됨
 - 만일 의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2013년부터는 2001년 이전의 유산세·증여세·세대생략세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었었음
 - 민주당은 2001년 이전 수준인 최고세율 55% 및 면세점 100만달러 적용을 주장하였고 공화당은 현재 수준인 최고세율 35% 및 면세점 512만달러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양당 사이에 타협점을 도출함

- '미국납세자의 세금감면법'에서는 유산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 면세점 적용 등에 대한 개정사항이 있었음
 - 기존에는 과세표준 50만달러 초과 시 3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기존의 세율은 유지하되 과세표준 100만달러 초과 구간에 대해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함
 - 2011년부터 적용되어 왔던 '물가수준 연동 면세점(exclusion) 500만달러' 기준 및 배우자 간 미사용 면세점 금액 승계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됨
 - 2013년 적용 면세점은 525만달러임

- 한편, 미국의 경우 총조세에서 유산세 및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42%에서 2009년 1.0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0.64%) 및 2011년(0.38%)에는 그 감소폭이 확대됨
 - 2011년에 유산세의 납부실적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비록 2010년 12월 17일 법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유산세 제도가 부활하였으나 2010년 사망자의 유산에 대해서는 유산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이연기준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임¹¹⁾

11) 신고·납부기한은 유산세는 사망일로부터 9월 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임

- 2011년에 증여세의 납부실적이 다소 증가한 이유는, 2010년 12월 17일 법 개정 이전까지는 2011년부터 다시 2001년 이전 수준의 최고세율 55%가 적용되는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2010년도(최고세율 35%)에 증여행위를 많이 한 것으로 추정됨

〈표 Ⅲ-3〉 미국의 유산세 및 증여세 세수 및 비중

(단위: 억달러, %)

연도	총조세	유산세	증여세	유산세 및 증여세	
				세입액	총세수 비중
2000	20,969	256	41	297	1.42
2001	21,288	252	39	291	1.37
2002	20,166	255	17	272	1.35
2003	19,529	209	19	228	1.17
2004	20,185	241	14	255	1.26
2005	22,688	236	20	256	1.13
2006	25,187	267	20	287	1.14
2007	26,915	246	24	270	1.00
2008	27,450	265	33	298	1.09
2009	23,453	216	31	247	1.05
2010	23,450	169	28	197	0.64
2011	24,149	25	66	91	0.38

나. 유산세 · 증여세의 산정방식

1) 유산세

- 2012년 기준 미국의 유산세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표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음
 - 유산세의 경우 총유산에서 일반 공제항목을 차감하고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를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서 산출한 잠정유산세에서 통합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함

〈표 Ⅲ-4〉 유산세 과세체계

a. 총 유산(gross estate)
- b. 부채, 장례비용, 유산관리비용 등
c. 조정된 총 유산(adjusted gross estate)
- d. 배우자 공제, 기부금 공제 등
e. 과세대상 유산(taxable estate)
+ f. 1976년 이후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adjusted taxable gifts)
g. 유산세 과세표준(estate tax base)
× h. 누진세율(18%~35%)
i. 잠정 유산세(tentative estate tax)
- j.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 k. 통합세액공제(unified transfer tax credit)
- l. 외국납부 유산세 공제
- m.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n. 유산세 납부세액

가) 과세표준의 산정

- 유산세의 과세표준은 총유산(gross estate)에서 유산 관련 경비와 손실, 고인의 부채, 배우자공제 및 기부금공제 등의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하고 1976년 이후 제공된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를 합한 금액이 됨

- 총유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단지 고인이 사망 당시 소유권을 보유한 국내외의 모든 자산 이외에도 비록 고인이 생존 당시 소유권을 양도하였어도 만약 고인이 양도한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받을 권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지배·통제권을 행사하였으면 이러한 증여 자산도 총유산에 포함됨¹²⁾
 - 총유산에는 사망 전 3년 내에 고인이 기증한 자산의 증여세, 배우자와의 공유 및 공동자산, 연부금(annuities), 일부 보험 수혜액 등도 포함됨
 - 총유산의 가액은 유산의 집행인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고인의 사망으로부터 6개월 이 지난 시점에 공정시장가격으로 평가함

12) IRC Sec.2033

- 공정시장가격이란 자산매매의 양 당사자가 관련 사실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지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가격을 말함¹³⁾

□ 과세대상 유산(taxable estate)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총유산에서 ① 장례비용과 유산 관련 경비와 부채 ② 손상·도난 손실 ③ 배우자공제 ④ 기부금액 ⑤ 주정부 사망 관련 세금 등의 항목을 제외하여야 함

- 지방정부가 법으로 허용하는 합리적 수준의 장례비용은 공제되며, 유산집행인 수수료, 법원비용, 유산 수집, 부채 정리 및 자산의 유지·배분 등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실제 지불한 비용도 공제됨

- 다만, 유산 수증자의 편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음

- 신의성실원칙에 의한 계약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였다면 부채로서 공제됨

- 고인에게 지불의무가 있는 이자, 지방정부 세금 그리고 고인 사망 시점에 발생한 각종 사업경비도 고인의 부채로 간주됨

- 화재나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절도 등 급작스런 손상으로 인한 손실도 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함

- 자선단체에 양도한 기부자산도 금액 제한 없이 공제됨

- 2004년 이후 사망하는 사람의 유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정부의 사망 관련 세금은 한도없이 공제가 허용됨

- 2004년 이전에는 동 지방세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었음

□ 인적공제 성격의 항목으로서는 배우자공제(marital deduction)가 유일하며, 생존 배우자에게 유산이 이전되면 해당 자산가액만큼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함¹⁴⁾

- 고인의 사망 당시 합법적인 배우자여야 하며(이혼하지 않은 별거 상태 포함), 배우자는 미국 시민이어야 함

- 배우자공제가 허용되는 자산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자산이 고인의 유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② 합법적 방식¹⁵⁾으로 배우자에게 자산이 이전되며 ③ 자산은

13) Reg. Sec. 20.2031 -1(b)

14) IRC Sec.2056

시한부 권리(terminal interest)¹⁶⁾가 아니어야 함

- 한편, 가업상속공제(estate tax deduction for qualified family owned business interests, QFOBI deduction) 규정¹⁷⁾은 2001년 ‘경제성장 및 세금감면법(EGTRRA)’에 따라 200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폐지되었으며, 이후 이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함
 - 가업상속공제는 ‘1998년 국세청 구조조정 및 개혁법’¹⁸⁾을 통해 가족기업과 같이 소유가 집중된 사업지분(closely-held business interests)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유산세 특례 규정(공제한도: 675,000달러)을 도입한 바 있음

- 참고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던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요건,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요건을 갖춘 가족소유사업지분(Qualified Family-Owned Business Interests)’에서 사업지분이라 함은 개인기업, 법인, 유한책임회사(LLC) 및 파트너십의 지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 가족소유 사업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상속재산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구성원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8년의 기간 중 적어도 5년 동안 해당 사업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함
 - 사망 당시 피상속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지분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사업지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구성원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8년의 기간 중 적어도 5년 동안 해당 사업활동에 중대하게 참여(material participation)했어야 함
 - 사망 당시 피상속인은 미국의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거주자였어야 함

15) 유언에 의한 유품이나 유증자산, 법정 상속권(Dower or Curtesy), 고인의 증여, 생존자 권리조항, 일반 지명권한, 고인의 생명보험 수증자로 지정된 사실 등에 의한 자산 양도를 의미함

16) 효력기간이 일시적이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효력이 종료되는 권리

17) IRC Sec.2057

18) Internal Revenue Service Restructuring and Reform Act of 1998

- 조정된 총유산가액(adjusted gross estate) 중 가족사업지분은 50%를 초과해야 함
- 주된 사업 장소는 미국에 소재해야 함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동안 다음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세제혜택은 환수되며, 상속인은 추가 유산세(additional estate tax)를 납부해야 함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내에 상속받은 가족사업지분(QFOBI)을 처분해서는 안됨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사업활동에 중대한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동안 미국의 시민권을 유지해야 함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동안 주된 사업장소를 미국으로 해야 함
- 또한 미국은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농장 등에 대한 평가특례’를 두어 농장 및 소유집중기업의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공정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로 평가¹⁹⁾할 수 있도록 함
 - 단, 특례규정에 따라 평가한 총자산가치가 공정가치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은 1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구성원은 농장 등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사망 전 8년의 기간 중 5년 동안 소유 및 사용하고 있었어야 함
 -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구성원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8년의 기간 중 5년 동안 농장 및 기타 사업의 운영에 중대하게 참여(material participation)했어야 함
 - 농장 또는 소유집중기업의 부동산의 조정가액은 총 유산 조정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 농장을 사용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주로 사용되는 평가방법은 ‘연간 총현금 임대료법(annual gross cash rental method)’이며, 부동산 가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계산할 수 있음
 - 평가특례를 받은 후 10년 내에 평가특례 대상자산 지분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이를

19) IRC Sec.2032,A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유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adjusted taxable gifts)는 총 유산에 포함된 증여 이외 1976년 이후 제공된 과세대상 증여를 의미함²⁰⁾
 - 과세대상 증여자산은 유산 평가시점이 아닌 증여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됨
 - 만약 증여 시점 이후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유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 증여세가 원천적으로 면제된 1인당 연간 13,000달러 이내의 증여는 비과세 증여이므로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에 포함되지 않음

나) 세율

- 유산세는 과세표준을 10개 구간(brackets)으로 구분해서 최저 18%,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함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세구간 및 한계세율은 변화가 없음

〈표 Ⅲ-5〉 유산세 및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2012년 현재)

(단위: 달러, %)

과세구간(부터)	과세구간(까지)	한계세율
0	10,000	18
10,000	20,000	20
20,000	40,000	22
40,000	60,000	24
60,000	80,000	26
80,000	100,000	28
100,000	150,000	30
150,000	250,000	32
250,000	500,000	34
500,000	—	35

20) IRC Sec.2001(b)

다) 세액공제

- 잠정 유산세가 산출된 후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통합세액공제, 외국납부유산세공제, 단기 재상속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할 유산세를 산정함
- 기납부 증여세액공제란 1976년 이후 제공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 당시 평가금액에 사망당시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잠정 유산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함
 - 증여세액공제는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액이 유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
 - 증여시점의 실제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만약 사망 시점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증여 당시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는 그 차액만큼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음
- 통합세액공제란 납세자가 평생 동안 증여나 상속을 통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상쇄할 수 있는 공제금액을 말하며,²¹⁾ 2012년 기준 통합세액공제는 1,772,800달러(면세점 512만달러에 해당)임
 - 생전에 증여세 계산 시 통합세액공제를 적용한 납세자의 경우 추후 유산세 계산 시 통합세액공제 금액을 차감조정하여야 함

라) 신규 및 납부

- 유산집행인(executor)은 총유산과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가 통합세액공제를 감안한 실질 면세액(2012년 512만달러)을 초과하면 유산신고를 해야 함
 - 유산집행인은 유언에 따라 지명된 사람 혹은 은행 등으로서 유산을 평가하고 관리하며 유산세를 납부하고 자산을 분배할 책임이 있으며²²⁾ 만일 유산집행인이 없으면 고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의무를 짐

21) IRC Sec.2010, Sec.2505

22) IRC Sec.2002

- 유산신고 및 납부 기한은 고인의 사망 이후 9개월 이내에 해야 함²³⁾
- 한편, 총유산에 소유집중기업(closely held business)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산세의 일부를 최대 10년간 분할납부할 것을 선택할 수 있음²⁴⁾
 - 소유집중기업의 지분가치가 조정된 총유산의 35%를 초과하는 경우여야 함
 - 분할 납부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해야 함

2) 증여세

- 1976년 이후 증여세와 유산세는 하나의 이전세제로 통합되었음²⁵⁾
 - 다만 증여세는 면제범위가 다소 복잡하며 현재까지 기증한 과세대상 증여에 대해 누적적 과세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유산세와 차이를 보임
-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음의 이유로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할 수 있음
 - 수증자 1인당 연간 일정금액(13,000달러) 이내의 증여는 비과세함
 - 자산을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면 증여 시점 이후 자산가치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유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납세자가 사망하기 이전 3년 동안 납세자가 증여를 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면 납세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나 유산에 포함되지 않음
 - 자선단체 기부금은 유산과 증여에서 똑같이 공제되지만 생존 당시 기부하면 소득세에서도 일정 조건하에서 공제가 가능함
- 2012년 기준 미국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표 III-6>에서 보는 바와 같음
 - 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공한 증여를 모두 합하여 현행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누적 증여에 대한 증여세(현행 세율 기준)를 제외한 금액에 미사용 통합세

23) IRC Sec.6075(a)

24) IRC Sec.6166

25) 다만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통합세액공제 적용 금액이 상이하였음

액공제를 차감하여 금년도 과세대상 증여세를 산출함

〈표 Ⅲ-6〉 증여세 과세체계

a. 현 시점의 과세대상 증여(1인당 연간 13,000달러 이하의 증여는 원천 배제)
+ b. 1932년 이후의 누적된 과세대상 증여
<u>- c. 증여관련 면제·공제(학자금·의료비 면제, (배우자공제, 기부금공제 등)</u>
d. 증여세 과세표준(gift tax base)
× e. 누진세율(18%~35%)
f. 잠정 증여세(tentative gift tax)
- g.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u>- h. 통합세액공제(unified transfer tax credit)</u>
i. 증여세 납부세액

가) 과세표준의 산정

-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증여가액뿐만 아니라 1932년 이후의 모든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합산하고 면제·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해야 함
 - 1932년 이후 과세대상 증여가액은 그 당시 증여시점의 평가액에 따름
- 과세대상 증여행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신탁기금의 형식 등의 방법으로 물적, 인적 그리고 유·무형 재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때에 발생함²⁶⁾
 -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평가함
 - 미국시민(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이 과세대상이 됨
- 납세자는 매년 수증인 1인당 현재의 권리로서 13,000달러 이하 금액을 제공하면, 이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영원히 제외됨²⁷⁾
 - 미래의 권리(future interest)를 이전한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함

26) IRC Sec.2511(a)

27) IRC Sec.2053

- 미래의 권리(future interest)이지만 미성년자를 위한 신탁기금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를 허용하는 예외조항²⁸⁾이 있음
 - 결국 과세대상 증여가액은 13,0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임
 - 부부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같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부부는 매년 1인당 26,000달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 없이 다수의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음
 - 부부의 경우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부부가 각각 반반씩 증여한 것으로 처리함²⁹⁾
 - 1인당 연간 증여세 면세금액은 1976~1980년 3,000달러, 1981~2001년 10,000달러, 2002~2005년 11,000달러, 2006~2008년 12,000달러, 2009~2012년 13,000달러로 증가되어 왔음
- 유산세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제공된 증여나 자선단체³⁰⁾ 기부금은 한도 없이 과세 대상에서 공제됨
- 개념상 증여에 해당하지만 다음의 항목들은 법적으로 한도 없이 면제가 허용됨
- 제3자를 위하여 교육단체에 직접 지불한 등록금
 - 어떤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단체에 직접 지불한 의료경비
 - 정치단체에 대한 증여
 - 이혼으로 인한 서면합의에 따른 재산권의 배분, 이혼에 의한 미성년자 자녀의 부양을 위한 자산 양도
 - 유언에 따른 고인의 자산 양도 시 수증자의 거부
 - 생일·졸업·결혼식·금혼식 때의 선물

28) IRC Sec.2530(c)

29) IRC Sec.2513q

30) 자선단체는 ① 기부 대상으로서의 미국 정부 ② 종교, 자선, 과학, 교육, 예술 혹은 미성년자나 동물보호를 위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단체(단체의 소득이 개인이나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운영의 상당 부분이 선전이나 정치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단체) ③ 증여 자산을 종교, 자선, 교육, 예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친목, 연합단체 ④ 퇴역군인단체(단체의 소득이 개인이나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단체) 등이 있음

나) 세율

- 2012년 현재 증여세는 유산세와 동일한 세율체계가 적용되므로 <표 III-5>를 참고하기 바람

다) 세액공제

- 잠정 증여세에서 기 납부 증여세액과 통합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실제 납부할 증여세를 산출함
 - 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공한 증여를 모두 합하여 현행 세율을 적용하여 잠정 증여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적 증여에 대한 증여세(현행 세율 기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함
 - 2012년 기준 납세자가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는 512만달러이며, 금번 증여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 금액은 이전까지 납세자가 사용한 통합공제금액을 제외한 잔액임

라) 신고 및 납부

- 증여세는 증여를 한 과세연도가 종료된 이후 4월 15일까지 신고³¹⁾해야 함
 - 증여세에 대한 신고·납부, 벌금규정은 대부분 유산세와 동일함

31) IRC Sec.6075(b)

2. 일본

가. 개요 및 동향

1) 개관

- 상속세는 상속,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포함),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 시점의 시가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됨³²⁾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유산을 받은 자,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취득한 자임

- 상속세를 과세하는 근거에 대하여 일본은 기본적으로 유산의 취득(무상의 재산취득)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과세하는 것이므로 ‘유산취득과세방식’을 택함
 - 일본의 상속세제도는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산취득과세방식을 기초로 하면서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산과세방식을 가미한 형태임
 - 우선, 상속세 총액 산정 시에는 실제 유산분할과 관계없이 유산총액 및 법정상속인의 수, 그리고 법정상속분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함
 - 그 다음에 각 상속인의 납부세액 산정에서는 상속세의 총액을 실제 상속인이 상속받는 비율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으로부터 각종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한 세액공제 조정이 이루어져 각자의 상속세액을 산출함
 - 이는 소득의 가득에 대해 과세하는 개인소득세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며,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역할을 함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증여(사인증여 제외)에 의해 취득한 모든 재산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실질적으로 본래의 증여와 동등의 경제적 이익을

32) 新川浩嗣 編著, 『圖說 日本の 税制』, 財経詳報社, 2009, p. 148

발생시키는 것도 증여에 포함되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임

- 일본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여의 정의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함
- 다만, 법인이 개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신 소득세(기타 소득) 과세됨

2) 주요 변천내용 및 최근의 동향

- 일본의 상속세는 1905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며 1953년 세무행정상의 난점으로 인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따로 취급함
- 1980년대 지가 급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자 1988년과 1992년, 1994년, 2001년, 2003년에 걸친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 1988년 이전에는 '2,000만엔 + 400만엔 × 법정상속인 수'였던 상속세 기초 공제 금액이 2012년 현재 '5,000만엔 + 1,000만엔 × 법정상속인 수'까지 확대됐음
 - 70%의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이 1992년 5억엔 이상에서 10억엔 이상으로 인상되었으며, 1994년에는 다시 20억엔 이상으로 인상됐음
 - 1987년 이전에는 최저 10%에서 최고 75%까지 14단계 세율 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6단계 상속세 세율 구조가 적용됨
 - 상속세 최고 세율의 인하와 동시에 과세구간의 수가 축소됐음
 - 증여세 세율에 대해서도 상속세에 준하여 개정되어 왔으며, 증여가액의 면세점은 2001년을 기점으로 60만엔에서 110만엔으로 증가함
- 한편, 다음세대로의 부의 이전 및 가업상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2003년 및 2004년에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경감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음
 - 생전 증여를 용이하게 하고,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하게 하기 위하여 상속 시 정산과세 제도 창설(2003년 도입)

-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 후 3년 내에 비상장주식을 주식 발행회사에 되판 경우에는 의제배당(최고세율 50%)이 아니라 주식양도차익(세율 20%)으로 과세(2004년 도입)

- 그동안은 상속세를 감세하는 방향으로 주로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7년 세계조사회사의 답신에서 상속세의 부담 수준을 적절히 회복하여 상속세의 자산 재분배 기능을 회복할 것을 권고함

- 이전까지 상속세는 지가의 상승에 따른 기초공제의 인상과 거주 및 사업의 계속에 대한 특례의 확대, 2003년의 최고세율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서 감세의 경향이 있었음
- 이제까지 대폭 완화되어 온 상속세의 부담수준을 적절히 회복하여 상속세의 자산 재분배 기증 등의 회복을 도모할 것을 권고함

- 한편 2008년에는 중소기업경영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후계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원활한 사업승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있어서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이 법률에 의해 비상장주식 등에 관한 상속세의 경감조치로서 과거에 10% 평가감액 하였던 것을 80% 납부유예로 개정함
 - － 이로서 기업승계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함

- 2012년 6월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회 논의가 있었으나, 2012년 8월 27일 개정 논의를 중단하였음

- 정부안에 포함된 상속세법의 내용은 기초공제를 줄이고 세율을 높이는 것이었음
 - － 현행 상속세 기초공제의 계산식인 ‘5천만엔 + 1천만엔 × 법정상속인 수’를 ‘3천만엔 + 600만엔 × 법정상속인 수’로 개정하여 기초공제를 줄임
 - －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55%로 인상함

- 상속 시 정산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증여자의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함
 - 201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 증여 시에 적용함
 - 정부안에 포함된 조세특별조치법의 내용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율을 완화하고 상속 시 정산 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증자의 대상을 확대함
 - 20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수증자로 하는 경우 증여세의 세율구조를 완화함
 - 상속 시 20세 이상의 손자도 받을 수 있도록 정산과세제도 대상을 확대함
 - 그 대신 소득격차 고착화 방지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처를 위한 상속세 과세기반 및 세율구조 재검토, 고령자 보유 자산의 젊은 세대로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고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증여세 재검토를 통해 2012년 동안 필요한 법제상 조치를 강구하기로 함
- 2013년 1월 29일 일본정부는 상속세율, 기초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등과 관련된 상속세법 개정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함
- 2015년 1월 1일부터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55%로 인상함
 - 과세표준 6억엔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55%의 세율을 적용함
 - 2015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기초공제가 현행 '5,000만엔 + 1,000만엔 × 법정상속인 수'에서 '3,000만엔 + 600만엔 × 법정상속인 수'로 인하함
 - 미성년자공제는 '10만엔(종전 6만엔) × 20세까지 남은 연수'로 인상되고, 장애인 공제는 '10만엔(종전 6만엔) × 85세(종전 70세)까지 남은 연수'로 인상함
-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실정을 고려하면, 앞으로 상속·증여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있어 중요한 정책수단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현재 1.60%임
- 총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02%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표 Ⅲ-7〉 일본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및 비중

(단위: 억엔, %)

연도	총 조세	국세 ¹⁾	상속세 및 증여세 ²⁾		
			세입액	총세수비중	국세비중
2000	882,673	507,124	17,822	2.02	3.51
2001	855,172	479,481	16,744	1.96	3.49
2002	792,227	438,332	14,528	1.83	3.31
2003	780,351	432,824	14,425	1.85	3.33
2004	816,417	455,890	14,464	1.77	3.17
2005	870,949	490,654	15,656	1.80	3.19
2006	906,231	490,691	15,185	1.68	3.09
2007	929,226	510,182	15,025	1.62	2.95
2008	853,894	442,673	14,549	1.70	3.29
2009	754,262	387,331	13,497	1.79	3.48
2010	780,237	414,868	12,504	1.60	3.01

주: 1)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임

2) 세입은 상속세와 증여세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자료: 일본국세청, 『국세통계연보 FY2010』

□ 또한 일본 국세청 통계자료를 기초로 2010년 현재 납부세액을 과세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실효세율은 상속세 11%, 증여세 8%임

○ 상속세의 경우 2003년 이후 11~1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증여세의 경우 2003년 4%에서 2010년 8%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표 III-8〉 일본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실효세율

(단위: 백만엔, %)

연도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액	납부세액	실효세율	취득재산가액	납부세액	실효세율
2003	10,358,210	1,126,333	11	2,308,082	87,725	4
2004	9,861,773	1,065,057	11	2,310,064	96,551	4
2005	10,195,255	1,156,712	11	2,375,984	115,857	5
2006	10,405,555	1,223,418	12	2,028,827	118,313	6
2007	10,655,731	1,266,612	12	2,053,834	107,362	5
2008	10,748,248	1,251,669	12	1,758,082	103,949	6
2009	10,123,038	1,163,159	11	1,629,939	101,762	6
2010	10,463,014	1,175,300	11	1,529,126	129,201	8

주: 실효세율은 납부세액을 과세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임
 자료: 일본국세청, 『국세통계연보 FY2010』

□ 한편, 일본의 상속세법상 공제제도 등의 주요 개정내용(논의중인 사항 제외)의 추이를 정리하면 〈표 III-9〉와 같음

〈표 Ⅲ-9〉 일본 상속세법 개정추이

연도	1992~1993	1994~2002	2003~현재
상속에 따른 기초공제 정액공제 법정상속인 비례공제	4,800만엔 950만엔×법정상속인수	5,000만엔 1,000만엔×법정상속인수	좌동 좌동
세율	10% 700만엔 이하 15% 1,400만엔 이하 20% 2,500만엔 이하 25% 4,000만엔 이하 30% 6,500만엔 이하 35% 10,000만엔 이하 40% 15,000만엔 이하 45% 20,000만엔 이하 50% 27,000만엔 이하 55% 35,000만엔 이하 60% 45,000만엔 이하 65% 100,000만엔 이하 70% 100,000만엔 초과 13단계	10% 800만엔 이하 15% 1,600만엔 이하 20% 3,000만엔 이하 25% 5,000만엔 이하 30% 10,000만엔 이하 40% 20,000만엔 이하 50% 40,000만엔 이하 60% 200,000만엔 이하 70% 200,000만엔 초과 9단계	10% 1,000만엔 이하 15% 3,000만엔 이하 20% 5,000만엔 이하 30% 10,000만엔 이하 40% 30,000만엔 이하 50% 30,000만엔 초과 6단계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의 경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8,000만엔 중에서 큰 금 액을 세액공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1 억6,000만엔 중에서 큰 금 액을 세액공제	좌동
비과세 사망보험금 비과세한도 사망퇴직금 비과세한도	500만엔×법정상속인수 500만엔×법정상속인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세액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특별장애인공제	6만엔/1년(20세까지) 6만엔/1년(70세까지) 12만엔/1년(70세까지)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주요한 개정사항	소규모택지 등의 특례를 확충하여 소규모주택 등 (200㎡까지)의 계산특례 로 감액을 도입 사업용택지 등 70% 겸용(최저) (60%) 사업용택지 등 70% 거주용택지 등 50% 거주용택지 등 60%	소규모택지 등의 특례를 확충하여 소규모주택 등 (200㎡까지)의 계산특례로 감액을 적용 일정사업용택지 등 80% 일정거주용택지 등 80% 일정국가사업용 택지등 80% 이외 50% 소규모택지 등의 특례에서 면적확대	① 상속 시 정산과세제 도의 도입 ② 주택취득자금의 증 여특례

나. 상속세·증여세의 산정방식

1) 상속세

- 상속세액의 계산은 과세가격의 합계액의 계산, 과세유산액의 계산, 상속세 총액의 계산, 개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개인의 납부세액의 계산이라는 5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 계산과정은 <표 III-10>에서 제시됨

〈표 III-10〉 상속세 과세체계

<p><제1단계: 과세가격의 합계액의 계산> 상속,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유산총액 - 비과세재산,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용 - 납세유예되는 비상장주식, 농지 등 + 상속개시일 3년이내의 증여재산가액 +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적용 선택한 증여재산가액 과세가격의 합계액</p>
<p><제2단계: 과세유산액의 계산> 과세가격의 합계액 - 기초공제액 과세유산액</p>
<p><제3단계: 상속세 총액의 계산> 과세유산액을 각 법정상속인이 각각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가정한 상속인별 취득액 × 상속세 누진세율(10%~50%) 상속세 총액 (개인별 세액의 합계)</p>
<p><제4단계: 상속인별 산출세액의 계산> 상속세 총액 × (실제 상속인별로 취득한 과세가격/과세가격의 합계액) 상속인별 산출세액</p>
<p><제5단계: 상속인별 납부세액의 계산> 상속인별 산출세액 - 배우자세액공제, 미성년자세액공제, 장애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기납부 증여세액 세액공제 상속인별 납부세액</p>

가) 과세표준의 산정

- 과세유산액(과세표준)의 계산은 과세가격의 합계액에서 유산에 관한 기초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 과세가격 합계액은 유산총액으로부터 비과세재산을 공제한 후 재산의 취득자 각각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장례비용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 3년 이내의 증여 재산 및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 적용 증여분을 가산하여 개인의 과세가격을 산출하고 이것을 합산한 것임
 - 이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유산에 관한 기초공제액 이하인 경우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음

- 기본적으로 상속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 그리고 취득하였다고 간주되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³³⁾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됨
 -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평가는 상속세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시기의 '시가'로 하고 있음

- 과세가격 합계액에서 차감되는 비과세 재산은 다음과 같음
 - 천황 황위와 함께 황제 후계자가 받은 재산
 - 묘지, 사당, 제사도구 및 이들에 준하는 것
 - 종교, 자선, 학술연구, 교육 등 공익사업용 재산
 - 심신장애인공제제도에 의거한 급부금의 수급권
 -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사망퇴직금 중 소정액

- 유산총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에는 피상속인의 차입금이나 지불해야 하는 금액 외에 공과금 등이 있으며, 사회통념상 이른바 장례에 필요한 매장, 화장, 납골 등에 필요한 비용도 차감항목임

33) 간주상속재산에는 사망보험금,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권리, 사망퇴직금, 신탁재산, 유언에 의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재산 등이 있음

- 유산 중 사업용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택지 등(토지 및 토지에 대한 권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택지 등의 평가의 일정부분을 감액하는 특례규정을 둠³⁴⁾
 - 택지의 이용 상황에 따른 특례적용 가능한 면적은 특정 사업용 택지 및 특정 동족회사 사업용 택지인 경우는 400m², 특정 주거용 택지인 경우는 240m², 대출 사업용 택지인 경우는 200m²를 한도로 함
 - 택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액의 감액비율은 특정 사업용 택지인 소규모 택지, 특정 거주용 택지인 소규모 택지, 특정 동족회사 사업용 택지인 소규모 택지인 경우는 80%, 대출사업용 택지인 소규모 택지인 경우는 50%임

- 사업승계에 관련된 승인된 중소기업 해당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경영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주식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중 일정부분을 납세유예함³⁵⁾
 - 상속되는 주식은 의결권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납세유예되는 주식의 한도는 통발행주식의 3분의 2임
 - 납세유예되는 금액은 주식 등의 과세가격의 80%에 상응하는 세액임
 - 납세유예된 세액은 후계자가 사망하거나 회사 파산 시 등에 납부면제가 확정되거나 납부면제되기 전에 특례적용을 받아오던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사업경영 중단 등의 경우에는 유예된 세액을 이자와 함께 납부하여야 함

- 농업상속인의 농지 상속에 대해서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농업을 영위하는 한 납세를 유예했다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에 납세가 면제됨
 - 농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일정한 농지 등을 상속받아 농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지 등의 가액 중 농업투자가격에 의한 가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납세유예가 적용되는 것임
 - － 농업투자가격이란 농지 등이 계속해서 농업용으로 제공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거래가격으로 관할 국세국장이 결정한 가격을 말함

34) 조세특별조치법 제69조의4

35)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7의2,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

- 납세면제는 ①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특례 적용을 받은 상속인이 특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 농지 등의 전부를 증여세의 납세유예가 적용되는 생전 일괄증여를 한 경우, ③ 특례의 적용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농업을 20년간 계속 했을 경우 등의 요건 충족 시 달성됨
- 한편 사망 직전 3년 내에 이루어진 생전 증여재산³⁶⁾ 및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 적용 대상 자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함
 - 상속일 3년 내의 생전 증여재산 및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기 때문에 증여일 이후 발생한 가치 상승분은 과세되지 않음
- 상속세 면세점이 되는 기초공제액은 5,000만엔(정액공제)에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비례공제)이 가산된 금액임
 - 법정상속인의 수는 실제로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 수를 의미함
 -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포기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함

나) 각 상속인별 산출세액의 계산 및 세율

- 상속인별 산출세액의 계산은 상속세 총액을 과세가격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과세가격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함
 - 상속세 총액의 계산이란 과세유산액을 각 법정상속인³⁷⁾이 각각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가정하여 개인의 취득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것을 합산하여 상속세 총액을 구하는 것임

36) 그 증여재산 가운데 증여세 계산에 있어 배우자공제를 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차감한 잔여가액이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됨

37) 일반적인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이며, 상속분은 배우자가 유산의 1/2, 자녀가 1/2(자녀 수로 균등분할)이 됨

- 법정상속인의 취득간주 상속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이 6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음

〈표 Ⅲ-11〉 상속세의 세율구조(2012년 현재)

(단위: 만엔, %)

과세구간(부터)	과세구간(까지)	한계세율
0	1,000	10
1,000	3,000	15
3,000	5,000	20
5,000	10,000	30
10,000	30,000	40
30,000	—	50

다) 세액공제

- 각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각자의 산출세액에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함
- 세액공제에는 배우자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음
- 배우자가 유산분할에 의해 i) 실제로 취득한 유산액과 ii) 과세가격의 합계액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상당액(그 금액이 1억 6,00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1억 6,000만엔) 중 적은 금액에 대응하는 세액 상당액이 배우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됨
- 즉, 배우자의 취득재산의 전 상속재산에서 점하는 비율이 그 법정상속분 이하이거나 취득재산 가액이 1억 6,00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엔에 그 미성년자가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속세액으로부터 공제함
- 미성년자공제액이 그 공제를 받는 자에 대해 산출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액을 그 미성년자공제를 받는 자의 부양의무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취득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7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각 1년에 대해 6만엔(특별장애인은 12만엔)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액으로부터 공제함
 - 장애인공제 규모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산출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장애인의 부양의무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상속이 있고 전후의 상속 모두에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후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액으로부터 전의 상속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조정하여 세액 공제하며, 이를 잇단(相次) 상속공제라 함

- 상속이나 유증으로 국외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대상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일본의 상속세에 상당하는 세금이 부과된 때에는 그 부과된 상속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 상속이나 유증으로 인한 재산 취득자가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에 동일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므로 납부한 증여세액 상당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됨
 - 상속세액으로부터 공제하는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 =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당해 연도 분의 증여세액 × (당해 연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 당해 연도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 적용을 선택한 경우에도 증여 당시의 증여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산추세액에서 공제됨

- 한편,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재산의 취득자가 친자관계의 혈족 및 배우자가 아닌 자가

재산을 상속하거나 유증을 받을 경우 그 사람의 상속세액은 20% 증액됨

라) 신고 및 납부

-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일)의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사망 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액을 납부해야 함
 - 신고의무는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및 상속 시 정산과세 적용자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발생함

2) 증여세

- 증여세 과세방법에는 ‘역년과세’와 ‘상속 시 정산과세’ 2가지 종류가 있음
 - 역년과세란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임
 - 과세가격에서 기초공제금액(110만엔)을 공제한 후,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방식임
- 상속 시 정산과세 제도는 2003년 다음세대로의 원활한 부의 이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65세 이상 되는 부모가 20세 이상의 자녀³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한해 선택 적용함³⁹⁾
 - 증여일에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자의 사망일에 당해 증여재산 가액과 상속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증여일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제도임
 -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한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함

38)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손자녀

39) 증여일이 속한 해의 1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및 20세 이상을 판단

- 과세가격에서 복수연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2,500만엔 한도의 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 수증자인 형제자매는 따로따로 증여자(父 또는 母)를 선택할 수 있으며, 증여 재산의 종류, 금액, 횟수 등에는 제한이 없음
 -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함
 -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5세 미만의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라 하더라도 동 제도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비과세한도도 3,500만엔으로 하고 있음
- 아래에서는 역년과세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며, 구체적인 과세체계는 <표 Ⅲ-12>에서 제시함

<표 Ⅲ-12> 역년과세방식 증여세 과세체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증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 - 비과세대상·납세유예대상 재산가액, 배우자공제(주거용 부동산), 자녀공제(주택취득자금) - 기초공제액(110만엔)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누진세율(10%~50%) 증여세 산출세액 - 외국납부 세액공제 증여세 납부세액
--

가) 과세표준의 산정

- 증여세 과세표준은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증한 증여재산의 가격의 합계로부터 비과세대상·납세유예대상 재산가액을 차감하고 배우자공제 및 기초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증여에 의해 취득한 모든 재산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본래의 증여와 동등의 경제적 이익을 발생하는 때에는 증여가 있었다고 간주하여 과세되는 경우도 있음

○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이 간주증여에 해당함

□ 한편, 부양의무자 상호 간에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의 증여가 있었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경조사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타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면제됨⁴⁰⁾

○ 종교·자선·과학·환경 등 공익목적 관련 기부금, 공직선거법상의 정치단체 기부금은 증여세가 부과됨

○ 특별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수익권에 대해서도 6,000만엔까지는 비과세로 하고 있으며, 집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친족 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 사업승계에 관련된 승인된 중소기업 해당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경영자인 혈족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주식가액을 증여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식관련 증여세는 납세유예함⁴¹⁾

○ 상속되는 주식은 의결권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납세유예되는 주식의 한도는 통발행주식의 3분의 2임

○ 납세유예된 세액은 선대 경영인이나 후계자의 사망 시 등에 납부면제가 확정되거나 납부면제되기 전에 특례적용을 받아오던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사업경영 중단 등의 경우에는 유예된 세액을 이자와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일정 농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 납세가 유예됨

○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농업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농지의 전부 또는 목초지 및

40) 상증법 제21조의3

41)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3,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

준 농지의 일부분을 그 농업을 계승하는 추정상속인 1인에게 증여할 경우에 납세유예가 적용됨

- 농지 등의 납세유예 세액은 수증자 또는 증여자 중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납세가 면제됨
- 납부사유에는 ① 특례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② 특례농지와 관련되는 농업을 폐지하는 경우, ③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④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담보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음

□ 부모 혹은 조부모가 20세 이상의 자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금액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공제한도는 일반주택의 경우 2012년은 1,000만엔, 2013년은 700만엔, 2014년은 500만엔이며, 특별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경우 2012년은 1,500만엔, 2013년은 1,200만엔, 2014년은 1천만엔임

□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 간에 주거용 부동산 또는 그 취득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2,000만엔을 한도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함

- 주택 취득자금을 제공한 경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취득한 집에 거주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주거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함
- 동일한 배우자로부터는 일생에 한 번 배우자공제 특례를 적용함

□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연간 증여세 기초공제액은 110만엔임

나) 세율

□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증여세의 세율은 10~50%의 6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상속세보다 과세구간 적용금액이 낮은 편이므로 같은 물건이 동일인에게 이전된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상속세 부담보다 높은 편임

- 다만, 일본에서의 증여세 산출구조는 누적과세 방식이 아닌 역년과세 방식이므로 기

간별 분산 증여를 통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음

〈표 Ⅲ-13〉 증여세의 세율구조(2012년 현재)

(단위: 만엔, %)

과세구간(부터)	과세구간(까지)	한계세율
0	200	10
200	300	15
300	400	20
400	600	30
600	1,000	40
1,000	-	50

다) 세액공제

-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인적공제 성격의 세액공제 및 기납부 세액공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만이 적용 가능함
 - 외국에 있는 재산의 증여를 받고 일본의 증여세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그 외국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라) 신고 및 납부

- 증여를 받은 해의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함
 - 증여세 신고의무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발생함

3. 영국

가. 개요 및 동향

1) 개관

- 영국의 상속세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속세 체계인 유산세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유산세는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배가 시행되기 전에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로 재산세적 성격을 띠며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 총액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과세하는 것임

- 영국에서의 상속세는 상속자가 사망한 시점에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생전의 신탁이나 증여에 대하여도 상속세납부의무가 발생하기도 하며 1986년에 자산이전세(capital transfer tax)에서 상속세(Inheritance Tax)로 명칭이 변경되었음⁴²⁾
 - 우리나라가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존재하는 반면, 영국은 상속세만 존재하고 일반적인 증여는 자본이득의 차원에서 과세하고 있는 것이 차이임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고인(故人)의 재산으로서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함
 - 주택의 부속물,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모든 증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함

- 상속세가 납세의무자는 유산관리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이 사망자의 재산에서 납부세금을 마련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유언집행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함
 - 유산관리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은 상속세 납부기한 전까지 상속에 대한 분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우선 자신들이 대납을 한 후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자신들이 대납한 세금을 유산으로부터 보충함

42)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p. 199

-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관리자가 납부의무자이며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7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 영국은 일반적인 증여행위가 있을 경우 상속세법의 범위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의 범주에서 과세를 하고 있음
 - 일반적인 증여나 이혼에 의한 재산 이전이 이루어질 때 한국에서의 증여세 개념으로 영국에서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부과되는 것임

2) 주요 변천내용 및 최근의 동향

- 영국은 1986년 자본이득세의 범주에 있었던 상속세를 상속세(Inheritance Tax)로 명칭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함
- 2007년 10월에는 상속세율 0% 적용구간을 신설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았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속세 감세 정책을 중단함
- 2012년에는 상속재산 중 10% 이상을 기부 시 적용세율을 40%에서 36%로 낮춰서 적용하게 하여 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이 개정됨
- 상속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11 회계연도에 0.62%로 2009년 이후 꾸준히 소폭 상승함
 - 상속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03 회계연도부터 2007-08 회계연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9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그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표 Ⅲ-14〉 영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및 세수비중

(단위: 백만파운드, %)

연도	총 연방세입	상속세 및 증여세	
		금액	세수비중
2001-02	321,768	2,383	0.74
2002-03	324,526	2,375	0.73
2003-04	343,509	2,521	0.73
2004-05	371,045	2,929	0.79
2005-06	397,930	3,277	0.82
2006-07	423,674	3,558	0.84
2007-08	451,063	3,834	0.85
2008-09	439,103	2,848	0.65
2009-10	408,509	2,396	0.59
2010-11	447,159	2,723	0.61
2011-12	466,634	2,913	0.62

자료: 영국국세청(HMRC),
http://www.hmrc.gov.uk/stats/tax_receipts/tax-receipts-and-taxpayers.pdf

- 일인당 상속세의 추이는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약 3년간은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10월 이후 면세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율이 0%로 정해짐에 따라 소액의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줄어들고 일인당 상속세는 0%세율의 적용 이전보다 증가함

〈표 III-15〉 영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1인당 세부담

(단위: 백만파운드, 천명, 천파운드)

연도	산출세액(A)	납세자 수			1인당세액(A/B)
		사망으로 인한 이전	생전이전	계(B)	
2001-02	2,383	23	2	25	95
2002-03	2,375	27	2	29	82
2003-04	2,521	31	2	33	76
2004-05	2,929	32	2	34	86
2005-06	3,277	33	2	35	94
2006-07	3,558	34	3	37	96
2007-08	3,834	24 ¹⁾	3	27	142
2008-09	2,848	15	4	19	150
2009-10	2,396	15	4	19	126
2010-11	2,723	17 ²⁾	5	22	124
2011-12	2,913	20 ²⁾	3	23	127

주: 1) 2007년 10월 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도입되어 상속세 납세자 수가 감소하였음

2) 잠정치임

자료: 영국 국세청(HMRC)

http://www.hmrc.gov.uk/stats/tax_receipts/table1-4.pdf

나. 상속세·증여로 인한 자본이득세의 산정방식

1) 상속세

□ 2012년 기준 영국의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표 III-16〉에서 보는 바와 같음

〈표 Ⅲ-16〉 영국의 상속세 과세체계

a. 총 유산(gross total of the estate in UK)
- b. 부채, 장례비용, 유산관리비용 등
c. 조정된 총 유산(total estate in UK)
- d. 배우자 공제, 기부금 공제 등
e. 공제 감면 후 총 순유산(total net estate in UK)
+ f. 국외 재산, 신탁 등 고려해야 할 추가 재산(Total other assets taken into account to calculate the tax)
g. 총 과세대상 유산(total chargeable estate)
+ h. 사망 7년이내에 증여한 자산
i. 총 과세대상 자산액(tentative estate tax)
- j. 상속세 기본공제(Inheritance Tax nil rate band at the date of death)
k. 과세표준(Value chargeable to tax)
× l. 세율(40%)
m. 상속산출세액(Inheritance Tax)

가) 과세표준의 산정

- 상속세의 경우 총유산에서 일반 공제항목을 차감하고 조정된 과세대상을 구한 후 배우자 증여와 자선단체 기부 등을 차감하여 영국 내의 공제 감면 후 총유산을 구함
- 영국 내의 공제 감면 후 순유산 국외 재산 등 추가로 고려할 재산과 사망 7년 내의 증여자산을 더해서 총과세대상 자산액을 산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할 상속세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됨

나) 세율

- 상속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금액(325,000파운드)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 '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납부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의 단일세율로 과세함
- 상속재산은 사망시점으로부터 과거 7년 이내에 발생한 신탁이나 증여 자산을 포함하여 산출함

- 상속재산이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는 40%의 세율로 상속세가 부과됨
 -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되는 상속의 경우 국가에 등록된 자선단체에 총상속자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적용세율을 10% 인하하여 36%의 세율로 과세를 하여 기부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짐
- 영국의 상속세 면세점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을 하였으나 2009년 이후 2015년까지 면세점을 동결시킨 상태임
-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한 면세점은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상속세의 부담을 2009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완화시켜온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면세점을 동결시킨 상황은 영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와 함께 침체하면서 국가 세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음

〈표 Ⅲ-17〉 영국의 상속세 면세점 추이

(단위: 파운드, %)

적용시기	면세점	전년 대비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2000.4.6 ~2001.4.5	234,000	-	-
2001.4.6 ~2002.4.5	242,000	3.42	1.8
2002.4.6 ~2003.4.5	250,000	3.31	1.7
2003.4.6 ~2004.4.5	255,000	2	2.9
2004.4.6 ~2005.4.5	263,000	3.14	3.0
2005.4.6 ~2006.4.5	275,000	4.56	2.8
2006.4.6 ~2007.4.5	285,000	3.64	2.3
2007.4.6 ~2008.4.5	300,000	5.26	2.3
2008.4.6 ~2009.4.5	312,000	4	3.6
2009.4.6 ~2015.4.5	325,000	4.17	-

자료: <http://www.hmrc.gov.uk/rates/iht-thresholds.htm> 한국은행(주요국의 물가상승률)

다)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사망 7년 이내의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던 세금을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함
 - 7년 이내에 증여된 것에 대한 기 납부세액공제는 실제로 증여 당시 납부해야 했을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함

라) 신고 및 납부

- 유산집행인(executor)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s)은 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납부는 유산집행인(executor)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s)이 상속자의 재산에서 세금을 마련하여 납부함
 - 상속 절차가 납부기일까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유산집행인(executor)은 차입을 하거나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일에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마) 상속세 중 기업상속 관련 세제

(1) 영국의 기업상속 관련 세제의 개요

- 영국은 사업자산공제제도와 농업자산공제제도의 두 가지의 기업상속 관련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6년 4월의 세법 개정 이후 2012년 현재까지 공제율은 자산에 따라서 50~100%의 공제를 해주고 있음
- 기업상속 공제를 위해서 사업자산공제제도와 농업자산공제제도 모두 사전적인 요적을 갖추고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업자산공제의 사전 적용요건: 과거 2년간 계속해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어야 함
 - 농업자산공제의 사전 적용요건: 2년의 소유요건과 농업을 목적으로 하여 7년의 점유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영국의 가업상속 관련 제도는 공제 당시에 사전적인 적용요건을 만족하고 공제요건에 명시된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에 공제 이후 자산의 유지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후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임
- 농업자산공제는 영국 영토 이내라는 지역적인 범위제한이 있으나 사업자산공제는 지역적인 범위 제한이 없는 것이 다른 점임

〈표 III-18〉 영국의 사업자산 및 농업자산 공제제도 개요

	적용요건	대상자산	공제율
사업자산 공제	① 적격한 사업 ② 중요사업자산 ③ 2년간 소유	비상장회사의 주식	100%
		양도자가 통제권이 있던 비상장 회사의 유가증권 ¹⁾ (securities)	100%
		상장 회사의 지배 주식(의결권 주식의 50% 초과)	50%
		전체적으로 사업에 주로 사용되었던 토지, 건물, 기계, 설비	50%
		전체적으로 사업에 주로 사용되었던 토지, 건물, 기계, 설비를 소유한 신탁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해당 신탁에 맡겨진 자산	50%
농업자산 공제	① 2년간 농업을 목적으로 점유 ② 7년간 농업을 목적으로 소유	농업용 토지 및 목초지, 삼림지 및 가축 및 어류의 사육에 사용되는 건물 등 요건 만족하는 주식 등	농업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임대용 농지: 100% 기타 농업자산: 50%

주: 1) 채무증서(debentures, loan notes)도 포함함

자료: 영국 국세청, 'SVM111040 -IHT Business Property Relief: Categories of business property and rates of relief'

(2) 사업자산공제(Business Property Relief)

- 사업자산공제를 위해서 공제 대상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적격한 사업조건, 중요사업 자산조건, 상속 전 2년간의 기간 동안 사업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조건 등 3가지 조건이 있음

- 적격한 사업조건이란 전문직 또는 천직(profession or vocation)에 의해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하지만 종마사육장, 화가, 조각가, 음악가, 작가와 같은 사업은 포함하지 않음
 - 사업자산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기업의 종류도 명시하고 있음⁴³⁾
- 중요사업 자산조건이란 영국 국세청에서 명시한 5가지의 자산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함
 - 기업 또는 기업 지분(예: 파트너십의 파트너지분)을 구성하는 자산
 - 증여 직전에 회사의 통제권을 갖고 있던 양도자가 이전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
 - 자산의 증여 직전에 직접적으로 회사의 통제권이 있던 양도자가 증여하는 상장된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
 - 통제권을 갖는 양도자의 회사 또는 파트너로 있는 파트너십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었던 토지 및 건물, 기계 및 설비자산
 - 이전 직전에 양도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었고 증여자가 수익자로서의 권한이 있는 신탁에 출연된 토지, 건물, 기계 및 설비자산
- 소유기간조건이란 상속 및 증여 직전에 2년 동안 양도자가 소유한 자산에 한해 중요 사업자산으로 보고 공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임⁴⁴⁾

43) 사업자산공제를 청구할 수 없는 기업이란 ① 유가증권(securities), 주식, 토지 및 건물의 거래 또는 투자를 주로 하는 기업, ②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 ③ 사업(business)이 판매 계약의 대상인 경우, ④ 회사 주식(shares in the company)이 판매 및 청산 계약의 대상인 경우(판매 및 청산이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한 재건 또는 합병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임
<http://www.hmrc.gov.uk/cto/customerguide/page16.htm#k>

44) IHTA 1984 §106, 배우자에게 상속받았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배우자가 보유했던 기간도 소유기간조건에 산입함

〈표 Ⅲ-19〉 사업자산공제의 자산유형별 감면율

(단위: %)

자산 유형	감면율
비상장 회사의 주식	100
이전 직전에 양도자가 통제권이 있던 비상장 회사의 유가증권 ¹⁾ (securities)	100
상장 회사의 지배 주식(의결권 주식의 50% 초과)	50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까지 양도자가 통제권이 있던 회사에서 사업을 위해 전체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토지, 건물, 기계, 설비	50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까지 양도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신탁이 보유하는 회사에서 사업을 위해 전체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토지, 건물, 기계, 설비	50

주: 1) 채무증서(debentures, loan notes)도 포함함

자료: 영국국세청, 'SVM111040 -IHT Business Property Relief: Categories of business property and rates of relief'

(3) 농업자산공제(Agricultural Property Relief)

- 농업자산공제(Agricultural Relief)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영국에 소재하는 농업용 자산의 이전에 대한 상속세 부과 시 공제를 허용하는 것임
- 농업자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용요건으로써 점유요건 또는 소유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점유요건은 상속 이전 2년간 점유해야 한다는 것이고 소유요건은 7년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임
- 대상자산은 농업용 자산(Agricultural property)이며 일정요건⁴⁵⁾을 충족 시 주식 및 증권에 대해서도 농업자산공제를 적용함
 - 농업용 자산이라 함은 농업용 토지 및 목초지, 삼림지 및 가축 및 어류의 사육에 사용되는 건물 등을 지칭하며 토지에 딸려 있는 농가주택(cottage, farm building,

45) 일정요건이란, ① 주식 및 증권의 이전에 의해 회사의 통제권(control)이 이전될 것, ② 회사의 자산과 주식 및 증권으로 이루어진 농업자산이 농업가치에 귀속될 수 있을 것, ③ 회사가 농업용 자산과 관련하여 점유요건 및 소유요건(occupation/ownership tests)을 만족할 것, ④ 양도자(transferor)가 주식 및 증권에 관한 소유권 요건(ownership requirement)을 만족할 것, ⑤ 주식 및 증권이 이전 시점에 판매를 위한 계약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farm houses)도 포함함

- 트랙터 같은 농기계나 농업 장비, 버려진 건축물, 수확된 농작물, 가축은 공제대상이 아님
- 지역적인 범위제한으로 영국 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특징임

〈표 Ⅲ-20〉 농업자산공제의 조건에 따른 감면율

(단위: %)

자산 유형	감면율
Vacant possession ⁴⁶⁾ 이 있는 토지	100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임대되어 온 농지	100
방목에 사용되기 위한 농지 및 건축물	100
1995년 9월 1일 이후 임대된 농지	100
그 외의 조건을 가진 농업용 자산(1980년 3월 10일부터 1995년 9월 1일까지 임대된 농지에 관련된 것을 지칭함)	50

바) 상속세에 적용되는 가산세 이자율(Interest rates)

- 영국은 납부기한 이후 상속세에 가산되는 가산이자율(Interest rates)을 필요에 따라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변경하고 있으며 환급이자율도 같이 변경시키고 있음
 - 이자율을 시장 상황에 맞는 시장이자율(Market rates)에 따라 변동시킴으로써 상속세의 지연납부나 과다납부에 따른 이득·손실과 시장이자율과의 차이를 통한 차익 거래의 방지가 목적인 것으로 추정됨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속이 지연된 경우 시장이자율보다 과다한 가산세 이자율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합리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도 될 수 있음

46) Vacant possession이란 외부의 개입 없이 농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점유자가 법에 의해 보호받는 임차인이 될 수 없는 경우의 소유 상태를 지칭함

〈표 Ⅲ-21〉 영국의 상속세 적용이자율의 변동

(단위: %, 일)

적용시기	가산세 이자율	환급에 대한 이자율	적용일 수
2009년 9월 29일부터 현재까지	3	0.50	-
2009년 3월 24일부터 2009년 9월 28일까지	0	0	189
2009년 1월 27일부터 2009년 3월 23일까지	1	1	56
2009년 1월 6일부터 2009년 1월 26일까지	2	2	21
2008년 11월 6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	3	3	61
2008년 1월 6일부터 2008년 11월 5일까지	4	4	304
2007년 8월 6일부터 2008년 1월 5일까지	5	5	153
2006년 9월 6일부터 2007년 8월 5일까지	4	4	334
2005년 9월 6일부터 2006년 9월 5일까지	3	3	365
2004년 9월 6일부터 2005년 9월 5일까지	4	4	365
2003년 12월 6일부터 2004년 9월 5일까지	3	3	275
2003년 8월 6일부터 2003년 12월 5일까지	2	2	122
2001년 11월 6일부터 2003년 8월 5일까지	3	3	638
2001년 5월 6일부터 2001년 11월 5일까지	4	4	184
2000년 2월 6일부터 2001년 5월 5일까지	5	5	455

자료: 영국 국세청, <http://www.hmrc.gov.uk/rates/iht-interest-rates.htm>

2) 증여세

-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2012년 현재 18%와 28%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으며 28%의 세율은 과세표준 35,000파운드 이상의 증여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음
 - 일반적인 증여나 이혼에 의한 재산 이전이 이루어질 때 한국에서의 증여세 개념으로 영국에서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부과되는 것임
- 일반적인 증여에 따른 자본이득세는 누구에게 증여하는가에 따라서 납부의무의 발생 여부가 달라짐
 - 배우자나 동성파트너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납세의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 이후 증여된 물건이 처분이나 양도되는 시점에서는 그 증여의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처분이나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가 발생함

- 최초 증여 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증여행위가 속하는 한 해 동안은 같이 살고 있어야 하며 증여 물건이 거래되는 주식이거나 재판매를 위한 상품이어서는 안 됨
 - 이러한 법률은 1982년 3월 31일 이후의 증여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행해진 증여 행위에는 당해 법률이 효력을 갖지 않음
 - 가족 구성원이나 연결된 사람(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사업상 파트너를 포함)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대한 손익을 명확히 하여 자본이득이 있는지를 계산하여야 함
 - 예를 들어 무상 증여 시에는 받은 대가가 없으므로 손실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본이득세는 발생하지 않음
 - 한 개인에게 증여 시에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추후 그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함
 - 영국 당국에 등록된 자선단체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없음
- 별거, 이혼 등의 경우에 생기는 증여의 경우는 별거나 이혼의 시기에 따라 자본이득세의 발생 여부가 달라짐
- 별거를 한 그 해에 재산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우자 또는 동성 파트너에 대한 증여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 별거를 한 다음 해부터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시에 자본이득세가 부과되므로 재산의 이전 시 자본이득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세 가지 조건은 주거지로부터 자산을 이전시킬 것, 자산이전의 해에 온전히 별거를 하고 있을 것, 이혼이나 동성 커플 계약이 청산되지 않았을 것임
 - 이혼이나 동성애 계약이 끝난 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는 자본이득세의 발생요건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영국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세 가지 정도가 있음
 - 이혼 또는 동성애 계약 청산의 확정 판결일, 법원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이전 시 그 명령일, 재산이 이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일 등이 영국 국세청에서 제

시하는 고려해야 할 기준일임

- 2012년 기준 영국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표 III-22>에서 보는 바와 같음
 - 영국은 2011-12년에는 기초공제가 10,600파운드임

<표 III-22> 영국의 증여세 과세체계

a.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양도가액
- b. 양도경비
- c. 취득가액
- d. 취득부대비용
- e. <u>개량지출</u>
f. 과세대상 자본이득($f=a-b-c-d-e$)
- g. <u>당기공제가능손실</u>
h. 조정후 양도차익($h=f-g$)
- i. 연간 면제금액
- j. <u>이월 결손금</u>
k. 과세표준($k=h-i-j$)
× l. <u>세율</u>
m. 산출세액

가) 과세표준의 산정

- 영국은 증여의 경우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인 과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10년 합산과세 등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음

(1) 수취인에 따른 면세

- 요건을 갖춘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증여의 경우 생애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증여 모두 상속세가 면제됨
 - 영국 내에 거주지를 둔 배우자(동성파트너 포함)에 대한 증여
 - 결혼하지 않은 배우자나 동성파트너로 등록되지 않은 파트너에 대한 증여는 면세

되지 않음

- 영국 및 특정 국가에 설립된 적격한 자선단체에 대한 증여
- 박물관, 대학, 지역사회의 아마추어 스포츠클럽, national trust와 같은 국가 기관에 대한 증여
- 의회 의원으로 2인 이상 선출되었거나 1인이 선출되고 150,000표 이상을 받은 정당에 대한 증여

(2) 연간 면세 금액

- 매년 3,000파운드까지의 생애 증여에 대해서는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 면제됨
 - 면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연간 면세(annual exemption)는 기타 증여 면세에 추가하여 적용함

- 불특정 다수에게는 인원에 관계없이 250파운드까지를 증여하는 것은 자본이득세가 면세됨(다만 같은 사람에게 3,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수는 없으며 다른 증여 면세제도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음)

- 증여를 한 후에도 생활에 충분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지출하는 정기적인 증여나 지불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이득세가 면세됨⁴⁷⁾
 - 특정인에 대한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의 증여
 - 크리스마스, 생일, 결혼기념일 또는 파트너등록기념일마다의 정기적인 증여
 - 생명보험의 정책에 따른 보험납입자 또는 특정인에 대한 정기적인 증여
 - 남편, 아내, 동성파트너에 대한 지불
 - 전 배우자에 대한 지불 또는 전 동성파트너에 대한 지불
 - 고령이나 장기적인 병으로 인하여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친족에 대한 지불
 - 자녀(입양자녀 포함)중 18세 이하이거나 18세 이상일지라도 학업에만 전념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자녀에 대한 지불

47) <http://www.hmrc.gov.uk/inheritancetax/pass-money-property/exempt-gifts.htm>

(3) 면세 증여

- 사망 이전에 발생한 7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 면세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를 면제함
- 결혼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면세함
 -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각 증여당 5,000파운드까지 면세
 - 조부모와 증조부모로부터의 증여는 각 증여당 2,500파운드까지 면세
 - 그 외의 자로부터의 증여는 1,000파운드까지 면세

나) 세율

-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2012년 현재 18%와 28%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으며 28%의 세율은 과세표준 35,000파운드 이상의 증여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음
 - 일반적인 증여나 이혼에 의한 재산 이전이 이루어질 때 한국에서의 증여세 개념으로 영국에서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부과되는 것임

다) 세액공제

-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2012년 현재 18%와 28%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으며 28%의 세율은 과세표준 35,000파운드 이상의 증여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음

라) 신고 및 납부

- 증여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납세자가 판단하여 자본이득세를 부담해야 할 것 같으면 과세연도 종료 후 10월 5일까지 영국국세청(HRMC)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종 신고 및 납부의 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임

4. 독일

가. 개요 및 동향

1) 개관

- 독일의 상속증여세법은 과세대상을 재산이 아닌 상속행위나 상속사건으로 정의하며⁴⁸⁾ 사망 또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또한 상속과 증여를 동일한 재산 이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세율 및 공제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함
 -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은 크게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 생존자 간의 증여, 조건부 상속 또는 증여, 가족재단으로 구분함
 - 피상속인과 상속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3개의 과세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공제금액 및 세율을 차등 적용함
 - 상속 및 증여재산에서 법정공제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함
 - － 법정공제항목은 장례비용 및 관련 경비 등 피상속인의 부채, 인적공제와 사업용 재산 등의 물적공제를 포함함
 - － 상속 및 증여세율은 7~50%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2) 주요 변천내용 및 최근의 동향

- 독일은 2010년에 법 개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세율을 I등급 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등급의 상속 및 증여인의 세율을 10% 내외로 상승시켜 상속·증여세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세율을 정하고 있음
- 독일은 2010년에 법 개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세를 적용하는 단계의 금액은 상승시켜

48)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2009, p. 361

세율 상승에 따른 급격한 상속·증여세의 증가는 방지하려는 의도를 보임

〈표 III-23〉 2009년 등급별 적용 세율

(단위: 유로, %)

과세표준	I 등급	II 등급	III 등급
52,000까지	7	12	17
256,000까지	11	17	23
512,000까지	15	22	29
5,113,000까지	19	27	35
12,783,000까지	23	32	41
25,565,000까지	27	37	47
25,565,000 초과	30	40	50

주: 1. I 등급: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상속만 포함)

2. II 등급: 형제자매, 조카, 양부모,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부모, 이혼한 배우자, 직계존속(증여만 포함)

3. III 등급: I, II 등급 외의 자간 상속 및 증여

자료: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표 III-24〉 2010, 2011, 2012년 등급별 적용 세율

(단위: 유로, %)

과세표준	I 등급	II 등급	III 등급
75,000까지	7	15	30
300,000까지	11	20	30
600,000까지	15	25	30
6,000,000까지	19	30	30
13,000,000까지	23	35	50
26,000,000까지	27	40	50
26,000,000 초과	30	43	50

주: 1. I 등급: 배우자, 직계비속(손자 및 양자포함), 직계존속(상속만 포함), 등록된 동성파트너

2. II 등급: 형제자매, 조카, 양부모,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부모, 이혼한 배우자, 직계존속(증여만 포함)

3. III 등급: I, II 등급 외의 자간 상속 및 증여

자료: § 19 (1) of the German inheritance tax act, (독일세법전)

- 독일의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인이 연대하여 납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건부 상속 및 증여의 경우에는 조건부 상속 또는 증여 조건에 의하여 수혜를 받는 자가 세금을 부담함

나. 상속세·증여세의 산정방식

1) 상속세

- 독일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은 방식과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산정방식도 거의 유사함

〈표 Ⅲ-25〉 독일의 상속세 과세체계

a. 상속대상 자산
- b. 공제 가능한 부채들
c. 순 상속대상 재산
+ d. 과거 증여로 인한 취득액
- e. 물적공제
- f. 인적공제
g. 과세표준
× h. 세율
i. 상속세 산출세액
- j. 기납부 증여세액 등 기납부세액
k. 상속세 납부세액

가) 과세표준의 산정

- 공제가능한 부채는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채를 포함하며, 상속재산 관리비용(변호사수수료 등)과 장례비용을 공제함. 단, 장례비용과 상속재산 관리비용의 경우 관련 증빙이 없더라도 10,300유로까지 공제 가능함

- 인적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세법개정으로 2009년 이후 적용되는 인적공제금액이 증가함
- 물적공제는 주택에 대한 물적공제와 가재도구 및 동산에 대한 물적공제가 있음

〈표 III-26〉 독일의 상속 시 물적공제 분석

구분		내 용
사업용자산에 대한 공제 ¹⁾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85% 또는 100% 공제
주택 공제	배우자 또는 생의 동반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100% 공제
	자녀	200제곱미터 이하 부동산 100% 공제
기타	과세등급 I의 가족	가재도구의 경우 41,000유로, 동산의 경우 12,000유로를 공제
	과세등급 II 또는 III의 가족	가재도구 및 동산 합계금액에 대해 12,000 유로까지 공제

주: 1) 사업용 자산을 승계 받은 경우 7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등 보다 강화된 법정 요건을 만족시키면 승계 받은 자산의 100%를 공제함

자료: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및 독일 통계청 자료 중 “Finanzen und Steuern Erbschaft- und Schenkungsteuer 2011” 참조

나) 세율

- 상속인의 등급별로 세율이 세분화되어 있음(〈표 III-24〉 참조)

다) 세액공제

- 기 납부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 발생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임
-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 또한 공제대상이 되지만 국외납부 후 5년이 지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를 해주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이 독일 내의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 초과분은 공제해주지 않음

라) 신고 및 납부

- 상속인은 다른 세목과는 달리 일반적인 세무신고 및 납부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재산의 취득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에 통보할 의무를 가짐
 - 통보 시에는 세액을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관계, 상속일, 상속자산의 종류와 가치, 사전증여 등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며 추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및 납부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받음
 - 통보 후 신고 및 납부는 독일의 조세기본법의 절차를 따름
 - 납부절차에 따른 납부의무자는 상속자임

마) 독일의 가업상속제도

- 독일은 사업자산(business property)을 상속 및 증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으로 인하여 기업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ErbStG)⁴⁹⁾에서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제도는 2008년 12월 5일 상속세개혁법(ErbStRG)을 통해 그 공제율이 대폭 인상(35%→85% 또는 100%)된 바 있으며, 그 결과 사업자산의 상속 시 관련 세부담이 대폭 완화되었음
 - 사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한 취지는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2008년의 상속세개혁법(ErbStRG) 이후 독일의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제도는 2010년 1월 1일 경제성장촉진법을 통해 더 개정되어 사업자산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공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세제혜택을 확대하였음
 - 2012년 현재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공제율과 조건 등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49) 독일 상속법 Erbschaftsteuer-und Schenkungsteuergesetz, ErbStG

〈표 Ⅲ-27〉 독일의 사업자산공제

구분	상속세개혁법 이전 (~2009.1.1)	상속세개혁법 이후 (2009.1.1~ 2009.12.31)	경제성장촉진법 이후 (2010.1.1~)
공제율	· ~EUR 225,000: 100% · EUR 225,000~: 35%	85%, 100%	85%, 100%
사후관리 요건	none	① 85% 공제 · 사업의 계속성: 7년 · 고용의 계속성: 7년간 급 여총액이 사업승계 과세 연도 급여총액의 650% 이 상 · 사업자산 비율: 수동자산 50% 이하 ② 100% 공제 · 사업의 계속성: 10년 · 고용의 계속성: 10년간 급 여총액이 사업승계 과세 연도 급여총액의 1,000% 이상 · 사업자산 비율: 수동자산 10% 이하	① 85% 공제 · 사업의 계속성: 5년 · 고용의 계속성: 5년간 급 여총액이 사업승계 과세 연도 급여총액의 400% 이 상 · 사업자산 비율: 수동자산 50% 이하 ② 100% 공제 · 사업의 계속성: 7년 · 고용의 계속성: 7년간 급 여총액이 사업승계 과세 연도 급여총액의 700% 이 상 · 사업자산 비율: 수동자산 10% 이하

자료: 『주요국의 가업상속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0. 10
독일 상속법 13조(Erbchaftsteuer-und Schenkungsteuergesetz, ErbStG)

(1) 상속세 개혁법(2009.1.1) 이전

- 상속세개혁법 이전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던 사업자산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보면,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독일에 소재하는 사업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과세면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를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해주었음
 - 독일에 소재하는 사업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첫 225,000유로에 대해서는 과세면제함
 - 225,000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은 65%만을 과세소득에 포함함⁵⁰⁾

50) 독일 상속법 ErbStG Secs. 13~17

(2) 상속세 개혁법(2009.1.1) 이후 현재의 공제내용

- 공제대상 사업자산의 사례로는 농림업 자산 및 농경지(cultivated land), 사업전체의 취득을 위한 국내 자산, 법인 주식, 파트너십의 파트너십 지분 등이 있음
 - 단, 주식회사 지분의 경우 전체 지분의 1/4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 단, 단순 관리자산(administrative assets) 또는 수동자산(passive assets)이 사업자산의 일정비율(50% 또는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⁵¹⁾

- 사업자산의 85% 공제를 받는 방법과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해서 받을 수 있는 100%과세 표준 감면의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음
 - 85% 공제의 요건은 3가지가 있음
 - 사업의 계속성 요건: 사업승계 후 5년 동안 그 자산과 함께 계속 유지할 것
 - 고용의 계속성 요건: 사업승계 후 5년간 급여총액은 사업승계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400%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자산 비율요건: 임대자산, 투자자산 등 수동자산(passive assets)은 전체 상속대상 사업자산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됨
 - 100% 공제의 요건은 3가지가 있음
 - 사업의 계속성 요건: 사업승계 후 7년 동안 그 자산과 함께 계속 유지할 것
 - 고용의 계속성 요건: 사업승계 후 7년간 급여총액은 사업승계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700%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자산 비율요건: 임대자산, 투자자산 등 수동자산(passive assets)은 전체 상속대상 사업자산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됨

- 과세면제 혜택 사후관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감면효과를 박탈하여 세금을 징수함⁵²⁾

51) 독일 상속법 ErbStG Secs. 13b(2)

52) 독일 상속법 ErbStG Secs. 13b

- 100%의 공제의 경우 예를 들어 급여총액요건인 700%를 달성하지 못하여 630%(목표의 90/100)을 달성 시 애초 100%의 감면에서 90/100의 비율을 적용하여 90%의 감면율만 인정하여 세금을 재계산하게 됨
- 100%의 공제의 경우 예를 들어 계속성 요건인 7년을 달성하지 못하고 4년만에 사업을 접은 경우 애초 100%의 감면에서 4/7의 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재계산하게 됨
 - 단, 사업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관련 자본이득을 6개월 내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

2) 증여세

〈표 Ⅲ-28〉 독일의 증여세 과세체계

-
- a. 증여대상 자산
 - b. 공제 가능한 부채들
 - c. 순 증여대상 자산
 - + d. 과거 증여로 인한 취득액
 - e. 물적공제
 - f. 인적공제
 - g. 과세표준
 - × h. 세율
 - i. 증여세 산출세액
 - j. 기 납부 증여세액 등 기 납부세액
 - k. 증여세 납부세액
-

가) 과세표준의 산정

- 공제 가능한 부채는 증여재산과 관련된 부채를 의미함
- 인적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세법개정으로 2009년 이후 적용되는 인적공제금액이 증가함

- 물적공제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제와 배우자 간의 주택증여에 대한 공제가 있으며 내용은 상속세에 적용하는 내용과 동일함

나) 세율

- 수증자의 등급별로 세율이 세분화되어 있음(〈표 III-24〉 참조)

다) 세액공제

- 기 납부 증여세액 공제는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 발생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임
-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 또한 공제대상이 되지만 국외납부 후 5년이 지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를 해주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이 독일 내의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 초과분은 공제해주지 않음

라) 신고 및 납부

- 수증인은 다른 세목과는 달리 일반적인 세무신고 및 납부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재산의 취득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에 통보할 의무를 가짐
 - 통보 시에는 세액을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증여인 및 수증인의 인적사항, 관계, 증여일, 증여자산의 종류와 가치, 사전증여 등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며 추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및 납부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받음
 - 통보 후 신고 및 납부는 독일의 조세기본법의 절차를 따름
 - 납부절차에 따른 납부의무자는 증여인과 수증자가 연대납부의무를 가짐

다. 세수 및 실효세율

- 독일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0.39%에서 2009년에 0.51%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표 Ⅲ-29〉 독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및 세수비중

(단위: 억유로, %)

연도	총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입액	총세수비중
2001	4,661.70	30.69	0.66
2002	4,416.28	30.20	0.68
2003	4,421.67	33.73	0.76
2004	4,427.61	42.83	0.97
2005	4,520.79	40.97	0.91
2006	4,884.44	37.63	0.77
2007	5,382.44	42.03	0.78
2008	5,611.82	47.72	0.9
2009	5,240.00	45.50	0.9
2010	5,305.87	44.04	0.8
2011	5,733.51	42.46	0.7

자료: Statistisches Jahrbuch, 2012, p. 269, Statistisches Jahrbuch, 2008, p. 572, 독일 통계청

- 상속세의 실효세율과 1인당 부담액은 2010년 상속세율의 상승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속세의 과세 구간을 늘리는 효과보다는 세율 인상효과가 세수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 증여세의 경우 실효세율과 1인당 부담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확대된 공제제도로 인하여 실효세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그 효과가 2011년부터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어 납부세액도 줄어드는 추세로 바뀜

□ 세율 상향과 공제 확대의 효과가 자산 취득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증여는 실효세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고 자산 취득시기를 조절하기가 힘든 상속의 경우에는 실효세율 증가와 세액증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됨

〈표 Ⅲ-30〉 독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1인당 세부담

(단위: 천유로, 명)

연도	상속세			증여세		
	납부세액	상속 건수	1건당 세액	납부세액	납세자 수	1인당 세액
2002	2,244	122,713	0.018	583	28,622	0.020
2007	2,923	140,531	0.021	1,298	41,886	0.031
2008	3,235	140,267	0.023	1,477	47,975	0.031
2009	2,885	132,748	0.022	1,390	40,666	0.034
2010	3,358	109,836	0.031	1,238	26,272	0.047
2011	3,525	109,564	0.032	696 ⁵³⁾	24,060	0.029

주: 상속세의 납세자 수는 해당 연도의 상속인 수를 의미하고 증여세의 납세자 수는 수증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독일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http://www.destatis.de>

〈표 Ⅲ-31〉 독일의 연도별 상속세 및 증여세 실효세율 추이

(단위: 백만유로, %)

연도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실효세율	과세표준	납부세액	실효세율
2002	12,213	2,244	18.37	4,854	583	12.01
2007	15,787	2,923	18.52	12,396	1,298	10.47
2008	17,542	3,235	18.44	15,581	1,477	9.48
2009	15,239	2,885	18.93	13,333	1,390	10.42
2010	15,946	3,358	21.06	14,636	1,238	8.46
2011	16,927	3,525	20.82	8,300	696	8.39

주: 실효세율은 공개된 연간 총산출세액을 연간 총 과세표준으로 나눠서 계산함

자료: 독일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http://www.destatis.de>

53) 2010년보다 반 정도로 줄어든 이유는 총과세대상 증여자산은 소폭 줄어들었으나 공제항목 공제후 과세대상 금액은 크게 줄어들어 2009년 이후 공제되는 금액이 증가한 효과가 유효세율뿐 아니라 납부세액 절대금액에도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파악됨

라. 면세점 및 공제제도

- 독일의 2011년 세법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법정공제항목에는 피상속인의 부채,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항목이 있으며, 동일인으로부터의 상속·증여의 경우 10년 기간을 합산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함
 - 피상속인의 부채: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채를 포함하며, 상속재산 관리비용(변호사 수수료 등)과 장례비용을 공제함. 단, 장례비용과 상속재산 관리비용의 경우 관련 증빙이 없더라도 10,300유로까지 공제 가능함
 - 인적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세법개정으로 2009년 이후 적용되는 인적공제금액이 증가함
 - 독일은 한국과는 달리 부와 모로부터의 공제가 각각 적용되므로 양쪽 부모 모두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40만유로씩 두 번을 공제받아 80만유로까지 공제액을 늘릴 수 있음⁵⁴⁾

〈표 Ⅲ-32〉 독일의 인적공제 금액

(단위: 유로)

관계	2009년 이전		
	인적공제금액	인적공제금액	특별인적공제 ⁵⁵⁾ 포함
배우자, 생의 동반자 ⁵⁶⁾	307,000	500,000	756,000
자녀, 사망자녀의 자녀	5세	205,000	400,000
	5~10세	205,000	400,000
	10~15세	205,000	400,000
	15~20세	205,000	400,000
	20~27세	205,000	400,000
손녀	205,000	200,000	200,000
과세등급 I 의 기타가족	51,200	100,000	100,000
과세등급 II 의 가족	10,300	20,000	20,000
과세등급 III 의 가족	5,200	20,000	20,000

자료: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및 독일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http://www.destatis.de>

54)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p. 372, 2009. 10

55) 생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생계비 명목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임

56) 생존 배우자 또는 생의동반자에 대해 특별생계비 공제 256,000유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음

〈표 Ⅲ-33〉 독일의 특별인적공제금액(생계비)

(단위: 유로)

특별인적공제금액(생계비)		공제금액
구분		
배우자		256,000
자녀, 사망자녀의 자녀	5세까지	52,000
	5세~10세까지	41,000
	10세~15세까지	30,700
	15세~20세까지	20,500
	20세~27세까지	10,300

- 물적공제: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제와 주택에 대한 공제를 포함함
 - 5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승계받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현행 세법상 8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7년 이상
 영위하는 조건으로 100%까지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표 Ⅲ-34〉 독일의 물적공제 분석

구분		2009년 이전	2009년 이후
사업용자산에 대한 공제 ¹⁾		256,000유로를 우선 공제 하고 남은잔액의 65%를 공제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85% 또는 100% 공제
주택 공제	배우자 또는 생 의 동반자	-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100% 공제
	자녀	-	200제곱미터 이하 부동산 100% 공제
기타	과세등급 I 의 가족	-	가재도구의 경우 41,000유로, 동산의 경 우 12,000유로를 공제
	과세등급 II 또 는 III의 가족	-	가재도구 및 동산 합계금액에 대해 12,000 유로까지 공제

주: 1) 사업용 자산을 승계받은 경우 7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등 보다 강화된 법정 요건을 만족시
키면 승계받은 자산의 100%를 공제함

자료: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및 IBFD 참조, <http://www.ibfd.org>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상속·증여세 일반사항

- 상속세의 부과방식(유산세 또는 유산취득과세)에 대해 주요국들은 각기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은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은 유산취득과세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어떤 방식이 우월한 방식인지는 각 국가의 사정이 다르므로 판단하기 어려움
 - 일본은 유산세의 성격도 일부 가미되어 있음

- 자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과세대상에 대해 주요국들은 상속·증여세의 납세의무자를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통적인 요소를 요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음
 - 미국은 상속세의 경우 유산집행인(유산집행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음
 - 영국은 상속세의 경우 유언집행인(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경우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함
 - 독일은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며,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 우리나라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세의 경우 6개월, 증여세의 경우 3개월인 데 반해

미국·일본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우리나라보다 길며, 증여세의 경우 일본·영국은 기본적으로 역년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남

-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미국 9개월, 일본 10개월, 영국 6개월, 독일 3개월의 여유를 두고 있음
-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의 경우 미국은 익년 4월 15일까지, 일본은 익년 3월 15일까지, 영국은 익년 1월 31일까지이며, 독일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임

〈표 IV-1〉 국제비교표 1

순번	국가 비교항목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1	상속세의 부과방식	유산세형	유산세형	유산취득과세형(일부 유산세 성격 존재)	유산세형	유산취득과세형
2	상속·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상속세: 상속인 증여세: 수증자	상속세: 유산집행인 또는 상속인 증여세: 증여자(증여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수증자)	상속세: 상속인 증여세: 수증자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유산집행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 증여 시 자본이득세: 증여자	상속세: 상속인 증여세: 수증자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3	상속·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	상속세: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 상속일로부터 9개월 내 증여세: 증여일이 속한 연도의 익년 4월 15일 내	상속세: 상속일로부터 10개월 내 증여세: 증여일이 속한 연도의 익년 3월 15일 내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6개월째의 말일 증여로 인한 자본이득세: 증여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익년 1월 31일까지	상속세: 상속재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상속세와 동일
4	상속·증여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최근 5년간)	1.48~1.76%(보합추세)	0.3~1.5%(하향추세)	1~2%(하향추세)	0.59~0.85%(2009년 이후 상승추세)	0.7~0.9%(2007년 이후 하향추세)

나.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과세구간, 면세점 및 세율체계 등)

-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구간 및 세율체계하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다름
 -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은 과세구간별 세율체계가 통합되어 있음
 - 일본과 영국은 별도의 과세구간별 세율체계가 존재함
 - 영국의 경우 증여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산의 무상이전은 자본이득세가 과세됨

- 2012년 현재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및 최고세율 수준, 누진구조 여부는 국가마다 상이함
 - 상속세와 증여세가 통합된 우리나라·미국·독일에서는 각각 5단계 10~50%, 10단계 18~35%, 7단계 7~50%임
 -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우리나라 30억원 초과, 미국 50만달러(약 5억 6천만원) 초과, 독일 2,600만유로(약 370억원) 초과부분임
 - 일본은 상속세 및 증여세 모두 6단계 10~50%이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 기준 금액이 다름
 -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상속세의 경우 3억엔 초과, 증여세의 경우 1,000만엔 초과부분임
 - 영국은 상속세의 경우 40% 단일세율이며, 증여로 인한 자본이득세율은 10%, 18% 또는 28%임
 - 자본이득세의 경우 35,000파운드(약 6,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 최고세율이 적용됨

- 2012년 현재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세되는 가액(면세점)은 국가마다 고유의 제도에 따라 다르게 파악됨
 - 우리나라는 상속세의 경우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이면 면세되며,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친족인 경우에 한하여 상환(10년간 누적기준으로 배우자 6

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마다 다름

- 미국은 평생 동안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이전할 수 있는 금액은 512만달러(약 58억원)로서 주요국들 중 높은 수준임
 - 수증자별 매년 13,000달러(약 1,500만원) 이하의 증여는 별도로 원천면제됨
- 일본은 상속세의 경우 총유산 기준 5,000만엔(약 6억원)이며,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별 매년 110만엔(약 1,300만원) 이하이면 면제됨
 -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한 경우 복수연도에 걸쳐 2,500만엔(약 3억원)까지 증여액은 면세됨
- 영국은 상속세의 경우 32만 5,000파운드(약 5억 5,000만원)이며 증여세의 경우 연간 3,000파운드(약 500만원)임
- 독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 각각의 경우 배우자 기준 75만 6,000유로(약 10억원), 자녀 기준 최소 40만유로(약 5억 7,000만원) 수준임
 -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누적하여 계산함

- 최근 5개년(2008년 이후)간 주요국들의 상속·증여세의 면세점 및 세율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세부담 수준을 유지 내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증여세 혜택 확대를 제외하고는 면세점에 영향을 주는 공제제도나 세율체계에 변화가 없었음
 - 미국은 2009년 말에 종료된 부시 정부 감세정책 및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적용된 오바마 정부의 세금감면법으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면세점은 높아지고 세율수준은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는 다시 세부담을 증가시키려는 방향(통합세액공제 인하 및 세율의 인상)으로 계획하고 있음
 - 일본은 2007년 이후 계속해서 상속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의 축소 및 세율 인상을 시도하였지만 입법화는 되지 못하였음
 - 다만 가업승계 관련 중소기업 지분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도입하였으며, 생전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은 완화하려 노력함
 - 영국은 상속세에 대한 면세점을 물가수준에 맞추어 인상하여 오다가 2009년 이후에는 면세점을 동결시킴

- 독일은 최근 5년간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을 10% 내외로 높였으나, 적용 세율구간의 금액도 함께 인상시켜 세부담 상승을 완만하게 하였음

- 일정 시점의 생전 증여에 대해 그 이후 상속이나 또 다른 증여가 일어났을 경우 누적하여 합산과세하는 기간은 국가마다의 제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와 독일은 상속일전 또는 증여일전 10년 이내의 증여금액은 누적하여 합산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은 기본적으로 평생 동안의 증여는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 시 누적 합산과세 하고 있음(상속세: 1976년 이후 모든 증여, 증여세: 1932년 이후 모든 증여)
 - 그러나 평생 동안 증여 및 상속에 대해 통합세액공제 1,772,800달러(면세점 512만달러에 해당)라는 비교적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완화함
 - 일본은 상속세 계산 시 사망 전 3년 이내의 증여금액은 누적 합산과세하나, 증여세 계산은 누적계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1년 단위 과세함
 - 증여세는 역년과세인 반면, 상속세보다 같은 금액 대비 적용세율이 높은 편임
 - 영국은 상속세 계산 시 사망 전 7년 이내의 증여금액은 누적 합산과세하며, 증여에 따른 자본이득세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과세함

- 주요국의 공통 특징으로는 생전 증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부를 조기에 이전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주요국들은 관련 제도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증여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가고 있음
 - 우리나라 및 일본, 영국, 독일은 모두 생전 기업승계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일정 비율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주식에 대한 저율과세특례를 도입함
 - 미국, 일본, 영국은 1년 단위로 수증자별로 재산 종류를 불문하고 과세제외하는 한도를 두고 있음
 - 미국은 연간 13,000달러(약 1,500만원), 일본은 연간 110만엔(약 1,300만원), 영국은 연간 3,000파운드(약 500만원)임

- 미국, 영국은 배우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과세 제외하고 있음
- 일본은 2003년에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생전 증여를 촉진하게 함
 -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란 65세 이상 부모가 20세 이상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2,500만엔(약 3억원)까지는 특별공제 처리하고 과세표준에는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낮추고 나중에 상속 시 정산하는 제도임
- 또한 일본에서는 20세 이상의 자녀, 결혼기간 20년 이상된 배우자에게 주택(주택취득자금 포함)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1,000만엔(약 1.2억원), 2,000만엔(약 2.4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표 IV-2〉 국제비교표 2

순번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비교항목					
5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기간 및 세율체계 통합여부	통합됨	통합됨	통합되지 않음	통합되지 않음	통합됨
6	세율구조	5단계, 10~50%	10단계, 18~35%	상속세 및 증여세 모두 6단계 10~50%이나 과세기간 금액기준은 서로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는 40% 단일 세율, ■ 증여로 인한 자본이득세율은 10, 18, 28%임 	7단계, 7~50%
7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	30억 원 초과	50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3억 엔 ■ 증여세: 1천만 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32만 5,000파운드 초과하는 분은 40% 과세 ■ 증여세: 35,000파운드 초과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2,600만유로 초과하는 분은 50% 과세 ■ 증여세: 상속세와 동일
8	면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경우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 증여세: 10년간 누적하였을 때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 및 증여를 통해 평생 동안 이전할 수 있는 금액은 512만달러임 ■ 증여세의 경우 매년 13,000달러 이하의 증여는 별도로 원천면제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총유산 기준으로 5,000만엔 +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 ■ 증여세: 1년간 110만엔(상속 시 장산과제제도 선택 시 복수연도에 걸쳐 2,500만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배우자가 취득하는 자산은 75만 6,000유로, 자녀가 취득하는 자산은 최소 40만유로 수준임 ■ 증여세: 상속세와 동일(10년 누적금액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배우자가 취득하는 자산은 75만 6,000유로, 자녀가 취득하는 자산은 최소 40만유로 수준임 ■ 증여세: 상속세와 동일(10년 누적금액으로)
9	최근 5년간 면세점 및 세율추이	인적공제 및 세율 수준은 변동이 없었음(다만 기업승계지원세제 혜택은 확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 정부 감세정책이 종료된 2009년말 이후 2010년~2012년 동안 면세점은 높이고 세율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점 인하 및 세율 인상의 움직임은 있었으나 법화되지는 않았고 현 수준을 유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에 대하여 2000년 이후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여 면세점을 상승시켰으나 2009년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독일은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을 10% 내외로 높였으나 적용 세율구간의 금액

순번	국가		독일
	비교항목	비교항목	
10	증여금액의 누적 과세기간	미국 ■ 2013년부터는 면세점은 낮추고 세율은 높히려는 입법 움직임이 있음 ■ 상속세: 1976년 이후 모든 증여 ■ 증여세: 1932년 이후 모든 증여	영국 후 2015년까지는 면세점을 동결시킴(세율은 40%로 변함 없음) ■ 상속세: 7년 ■ 증여로 인한 자본이득세: 1년(역년과세)
	한국 ■ 상속세: 10년 ■ 증여세: 10년	일본 ■ 중소기업 지분승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 유예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함 ■ 상속세: 3년(상속 시 정산 과세제도를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증여액) ■ 증여세: 1년(역년과세) ■ 2003년에 '상속 시 장산과 세제도' 도입함(65세 이상 부모가 20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 시 2,500만 엔까지 특별공제되며 20% 단일 세율 적용되는 방식이며, 상속 시 정산함) ■ 20세 이상 자녀에게 주택 취득자금 증여 시 1천만 엔까지 비과세 ■ 결혼기간 20년 이상인 부부간에 주거용 부동산 증여 시 2천만 엔까지 비과세 ■ 연간 수증자별 110만엔 한도에서 증여세 과세 제외 ■ 기업승계 대상 중소기업 사업지분 생전 증여 시 납세유예 가능	독일 도 상속시켜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완만하게 함 ■ 상속세: 10년 ■ 증여세: 상속세와 동일
11	생전증여 촉진제도	한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운영 중 ■ 배우자 간 증여는 한도 없이 공제됨	영국 ■ 부부 등 법에 명시한 관계의 경우 증여로 인한 자본이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음 (다만 증여 이후 양도 시에는 자본이득세 부과) ■ 생전에 기업승계 시 10% 저율 과세됨

다. 상속·증여세 주요 공제제도

- 주요국들은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 시 사업용 자산(영농자산 포함)에 대한 상속·증여공제, 납세유예, 평가특례 등 고유의 세제상 지원제도를 두고 있으며 최근의 경향은 점차 기업승계에 대한 공제액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경향임
 - 우리나라는 상속에 있어서는 기업상속공제제도와 영농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증여에 대해서는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기업상속공제는 70%의 공제율로 요건에 따라 300억원까지 공제되며 영농자산 공제는 5억원
 - 미국은 상속 시 소유집중 사업지분에 대한 기업상속공제(2004년부터 2012년까지 잠정폐지), 농장 등에 대한 평가방법특례 제도를 두고 있음
 - 소유집중 사업지분 상속공제: 사망 전 5년 이상 지분보유 및 사업 참여, 지분율 50% 이상 상속 시 67만 5,000달러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향후 10년간 지분 양도 제한, 사업유지 등의 사후관리 규정을 둠
 - 농지 등 평가특례: 농지, 소유집중 기업의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공정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로 평가 가능함
 - 일본은 상속 시 사업용 소규모 택지에 대한 평가특례, 상속 및 증여 시 기업승계 관련 주식에 대한 납세유예, 상속 및 증여 시 농지에 대한 납세유예 제도를 두고 있음
 - 사업용 소규모 택지에 대한 평가특례: 80% 감액평가
 - 기업승계 관련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납세유예: 승인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50% 초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총 발행주식의 3분의 2까지 상속세의 80%(증여세는 100%) 상당액을 납세유예하며, 추후 특정 사유 발생 시 납세의무 성립함
 - 농지에 대한 납세유예: 농업을 유지하는 한 특정 농지의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일정 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세유예함
 - 영국은 상속에 대하여 사업자산공제제도와 농업자산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사업자산공제제도는 요건과 대상자산에 따라서 50~10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농업자산제도 또한 요건과 자산에 따라서 50~10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공제이후의 사후관리제도는 영국은 두고 있지 않음
 - 독일은 사업자산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농업에 대한 공제 또한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공제율은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서 85~100%에 이르고 있음
 - 사후관리에 대해서 충족을 못할 시 공제 전액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미이행한 의무만큼만 비례적으로 공제를 취소함
-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인적공제와 관련해서는 주요국별로 그 항목과 한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음
 -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에게 분배된 가액에 따라 5억~30억원, 자녀공제는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는 20세에 달할 때까지 5백만원, 장애인공제는 75세에 달할 때까지 500만원이며,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인적공제의 합이 3억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3억원으로 함
 - 미국은 배우자공제(한도 없음) 외에 인적공제 제도는 없음
 - 일본은 총유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제로서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 공제가 있고, 각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배우자세액공제, 미성년자세액공제, 장애인세액공제가 있음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이하로 취득하면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되며,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취득가액 1억 6,000만엔에 상당하는 상속세까지는 세액공제됨
 - 미성년자세액공제는 20세에 달할 때까지 연간 6만엔, 장애인세액공제는 70세에 달할 때까지 연간 6만엔(특별장애인은 12만엔)임
 - 영국은 별도의 인적공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 독일은 친족의 등급별로 차등화하여 인적공제를 하고 있음
 - 배우자 75만 6,000유로, 자녀는 연령에 따라 6단계로서 40만~45만 2,000유로, 손자녀 20만유로, 직계존속 10만유로, 기타 친족 2만유로임

- 증여세 계산 시 공제되는 인적공제는 주요국별로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친족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달리 적용함
 -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3천만원, 기타 친족은 5백만원임
 - 미국과 영국은 배우자에 한하여 한도 없이 공제됨
 - 일본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없으나, 주택(주택취득자금 포함)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2천만엔, 자녀에게 증여 시 1천만엔까지 공제됨
 -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기간 20년 이상, 자녀는 20세 이상임
 - 독일의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됨

- 주요국들의 주요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는 공익단체(자선단체 등)나 국가기관·소정의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 사회통념상의 생활비·경조사비·의료비·학자금 등으로서 큰 차이가 없음

- 상속세 계산 시 미사용 면제금액(공제금액)을 생존 배우자에게 이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에는 미국, 영국이 있었음
 - 미국은 평생 동안 512만달러만큼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 없이 이전시킬 수 있는데, 생존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의 미사용 공제금액을 넘겨받을 수 있음
 - 영국은 첫 번째 배우자 사망 후 재혼 시 재혼 배우자도 사망 시 첫 번째 배우자의 상속 때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325,000파운드 중 미사용액)을 더해서 사용 가능함

- 그 밖에 국가별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미국은 평생 동안 공제할 수 있는 상속·증여 통합한도(512만달러)를 두고 있으며, 각종 면세점이나 공제금액은 불가연동하여 인상해오고 있음
 - 일본도 각종 공제금액 등을 불가연동하여 인상하는 추세임
 - 영국은 상속세 미납 가산세를 시장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변동시키고 있음

〈표 IV-3〉 국제비교표 3

순번	비교항목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12	기업승계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상속공제제도 운영: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기업상속 시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기업상속자산의 70%의 한도 내에서 10억~300억까지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농상속공제제도 운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업에 종사 및 농지 인접 거주 시 5억원 한도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집중 사업지분에 대한 기업상속공제 (2004년에 잠정폐지): 사망 전 5년 이상 지분보유 및 사업 참여 했어야 하며 지분율 50%이상일 때 675,000달러 초과에 공제함. 향후 10년간 지분양도, 사업중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둔 ■ 농장 및 소유집중기업의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공정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로 평가할 수 있음 ■ 소유집중 사업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10년간 분할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소규모 택지 평가특례: 80% 감액하여 평가함 ■ 사업승계 관련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상속 또는 증여 시 납세유예: 승인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50% 초과 보유하여야 하며, 총 발행주식의 2/3까지 상속세의 80% 상당액(증여세는 100%)까지 납세유예함. 승계 후 특정 사유 발생 시 납부의무 발생할 수 있음 ■ 농지의 상속 또는 증여 시 납세유예: 농업을 유지하는 한 특정 농지의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일정 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세유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산공제제도 운영: 중요사업자산의 이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요건에 따라 50%~10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농업자산공제제도 운영: 농업용 자산에 대하여 점유요건 또는 소유요건 만족 시 자산 내용에 따라 50% 또는 100%의 공제율을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에 적합한 기업의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85% 또는 10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함(사업의 연속성, 고용의 계속성, 자산과 업종에 대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
13	상속세 주요 인적공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공제: 법정상속 지분내 실제상속받은 가액이며 최대 30억 	배우자공제: 한도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총액에서 법정상속인 수 1인당 1천만 엔 공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에 대한 면세 이외에 인적공제를 두고 있지 않고 면세점 만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공제: 756,000 유로 ■ 자녀공제: 연령에 따라

순번	국가 비교항목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14	증여세 주요 인적공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한도 ■ 자녀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20세에 달할 때까지 연 500만원 ■ 장애인공제: 75세에 달할 때까지 연 500만원 	<p>배우자공제: 한도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공제: 혼인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2천만엔 한도 ■ 자녀공제: 20세 이상 자녀가 부모 등으로 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제공받는 경우 1천만엔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공제: 증여로 인한 자본이득세 완전 면제 	<p>상속세와 동일함</p>
15	상속세 물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인에게 주택 상속 시 10년 동거요건 충족 시 5억원 한도로 주택 가격에서 40% 공제 	<p>해당 없음</p>	<p>해당 없음</p>	<p>해당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자녀에게 주택 상속 시 10년이 상 거주요건 충족하면 100%면세(자녀는 200㎡한도)

순번	국가 비교항목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16	증여세 주요 비교세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재산공제(2억원 한도) 사회복지 및 공익법인에 출연, 국가기관에 기부, 동지에 대한 비과세(5억원 한도), 친족으로부터 장애인에게 받은 신탁(5억원 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생활비·학자금·경조사비 	<p>등록금, 자선단체 기부, 의료비, 정치단체 기부, 생일·졸업·결혼 때의 선물 등은 한도없이 비과세</p>	<p>생활비 및 교육비 지원액, 공익단체 기부금, 정치단체 기부금,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은 한도 없이 비과세</p>	<p>국가에 등록된 자선기관, 15만표 이상 득표한 정당, 박물관, 대학 등 국가기관에 대한 증여</p>	<p>자선단체 기부, 박물관 등 국가기관에 대한 기부, 종교단체 기부, 정당 기부, 통념상 타당한 생일·졸업·결혼 때의 선물</p>
17	상속세 미사용 면제금액 배유자간 이월 가능여부	<p>해당사항 없음</p>	<p>생존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의 미사용 면제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p>	<p>해당사항 없음</p>	<p>첫 번째 배우자 사망 후 재혼 시 첫 번째 배우자의 상속 때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을 더해서 사용 가능</p>	<p>해당사항 없음</p>
18	기타 각국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세액공제, 1인당 매년 증여세 면세가 액수준 등은 물가수준에 따라 인상되어 왔음 ■ 배우자에 대한 상속, 증여 시 한도 없이 공제되는 것이 특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공제금액 및 1인당 매년 증여세 면세액액수준 등은 물가수준에 따라 인상되어 왔음 ■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 증여 시 일정한도까지 과세 제외하는 명문 규정을 둔 	<p>상속세 가산세율을 고정시키지 않고 시장이자율이나 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시킴</p>	

2. 시사점

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개편방향

- 우리나라의 현재 상속·증여세율은 10~50% 5단계 누진구조로서, 최고세율의 경우에만 봤을 때는 OECD 평균 최고세율(26%)보다 높은 수준이나 전반적인 실효세율이 높은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 상속세율의 최고세율은 조사대상 주요국들과 단순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 독일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일본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됨
 - 미국은 18~35%(최고세율 적용 50만달러 초과)⁵⁷⁾, 독일은 7~50%(최고세율 적용 2,600만유로 초과), 일본은 10~50%(최고세율 적용 3억엔 초과) 수준이며, 영국은 40% 단일세율임
- 조사대상 주요국들의 최근 5년간 상속·증여세제 개정 추이를 살펴보면 세부담 수준을 유지 내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최근 조사대상 주요국들은 정부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부자 증세 등 세제 강화 방향으로 가는 추세인 것으로 보임
 - 미국은 2013년부터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40%로 인상하였음
 - 일본은 최근 5년간 세제상의 변화는 없었으나 2007년부터 계속하여 세율 인상 및 각종 공제금액 축소를 위해 입법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음
 - 2013년 1월에도 구체적 논의가 있었으며 관련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임
 - 영국은 계속해서 인상시켜왔던 면세점 적용액을 2009년부터 동결시켰으며, 독일은 최근 5년간 10% 내외로 세율을 인상해온 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적용세율의 금액도 동시에 소폭 인상하여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함
- 그러나 조사대상 주요국들의 사례와는 반대로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57) 2013년부터는 100만달러 초과부분에 대해서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됨

국제적 투자유치, 자영업자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목표로 하여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감경하기도 한 경우도 일부 존재하기도 함

-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1972년에 상속·증여세제를 폐지한 바 있으며 호주도 1972년부터 198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함
- 포르투갈과 슬로바키아는 2004년에,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증여세제를 폐지한 바 있음
- 다만 조사대상 주요국 중 일본, 영국, 독일에서도 가업승계·상속에 대해서만큼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였음

- 결국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은 단순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비교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제도의 지원범위, 증여세와 상속세의 연계구조, 개인소득세율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후 세법 개정의 방향을 수립해야 함

나. 생전증여에 대한 세제지원

-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주요국들에 비해 증여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의 혜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편인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우리나라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수증인은 전체 수증인의 50%를 넘고 있는 상황 이므로, 이는 증여에 대하여 상당히 광범위하게 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인 바 생전증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 우리나라는 10년간 누적하여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의 공제혜택 등의 친족공제제도 외에 기타 별다른 증여세를 경감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함
 - 공익단체나 정부기관 및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 시 비과세,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생활비·의료비·학자금 지원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생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세제혜택의 존재는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주요국들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현상을 겪으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바, 젊은 세대 등에게 부를 조기에 원활히 이전시키는 방안이 요구됨
 - 부모세대의 부는 생존 배우자 또는 궁극적으로 자녀세대에 이전되므로, 그 시점을 상속시점(사망시점)이 아닌 생전에 조기이전하게 함으로써 소비활력을 높여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함임

- 다음의 조사대상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활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상속세보다 증여세의 세부담을 완화하거나 증여로 인한 세액 납부시점을 차후로 이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국은 상속이나 증여를 불문하고 평생 동안 이전할 수 있는 재산금액을 512만달러(약 57억원)로 정하고 있고, 독일 역시 상속이나 증여를 불문하고 10년 단위로 배우자 756,000유로(약 10억원), 자녀 400,000유로(약 5.7억원)까지 세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음
 - 미국, 영국은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한도 없이 과세제외 됨
 - 미국, 일본, 영국은 1년 단위별로 수증자별 일정금액까지는 재산종류를 불문하고 과세 제외함
 - 미국: 13,000달러(약 1,500만원), 일본: 110만엔(약 1,300만원), 영국: 3,000파운드(약 5백만원)
 - 일본의 경우 주택취득자금을 20세 이상 자녀에 증여 시 1,000만엔까지(약 1.2억원), 혼인기간 20년 이상인 배우자에게 증여 시 2,000만엔(약 2.4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음
 - 일본은 2003년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생전 증여 시 2,500만엔(약 3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500만엔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만 20% 저율 과세하며, 이후 부모 사망시점에 이를 상속세에서 정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실질적으로 부모 사망시점까지 납부할 세액을 이연시킬 수 있는 제도임

다. 가업승계 지원제도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업의 상속(증여 포함) 시 기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여러 형태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일본, 영국에서는 최근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혜택을 더욱 확대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2011년 말 법 개정을 통해서 가업상속의 경우 그 공제범위를 가업상속재산의 70%(최대 300억원)까지 확대함

- 가업상속공제가 개인 재산가의 부의 이전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개인 사업가가 운영하는 사업의 계속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유지되도록 가업의 범위 규정을 보다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 가업상속공제 규정에서는 가업의 범위를 주로 규모를 통해 제한하고 있을 뿐, 전문성을 갖춘 개인 사업가가 해당 가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요소가 없음
 - 이에 대해 가업의 범위 규정에 '전문적이거나 천직으로 운영하는 기업' 요건 등을 추가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가업승계 지원혜택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요국들의 가업상속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상속세의 전반적인 정책기조, 가업상속공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율을 상속세 개혁법을 통해 35%에서 85%, 100%로 확대한 배경을 보면 유럽 여러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 가운데 이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세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
 - 영국의 경우 공제대상인 사업의 범위를 정하면서 '전문적이거나 천직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에 제한하고 있음
 -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혜택을 주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공제대상이 비

교적 좁게 설정되어 있음

라.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 시의 공제혜택

- 조사대상 주요국들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 시보다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바,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경우 상속 시 생존배우자는 사망배우자의 미사용 면세점 금액(512만달러 중 미사용액)을 넘겨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일체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상속 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이하로 취득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전액 상속세가 면제되며, 혼인기간 20년 이상인 배우자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2천만엔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됨
 - 영국은 상속에 대해서는 첫번째 배우자 사망 후 재혼 시 재혼 배우자도 사망 시 첫번째 배우자의 상속 때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을 더해서 사용 가능한 상속세 면세금액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간 증여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음
 - 독일의 경우 상속·증여 공제액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10년간 누적 50만유로(상속 시 756,000유로)이며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시 주택의 크기와 위치에 상관없이 10년간의 보유요건 충족 시 면세혜택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도 생의 동반자로서의 배우자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 시 여러 형태의 공제범위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배우자 간의 증여가액 공제한도를 현행의 10년 누적 6억원보다 확대함
 -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주거안정을 위해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별도의 공제제도를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배우자 간 미사용 공제금액 이월승계’ 제도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가 미국이나 영국의 그것과 상이하므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 다만 배우자 간에는 공유·동반관계를 중시한 사례로서 참고할 수 있음
- 미국과 영국은 상속세 계산 시 사용되는 고정된 공제금액(미국: 512만달러, 영국: 325,000파운드)이 있어 우리나라의 제도와 차이가 있음

마. 물가상승 반영에 따른 공제금액의 연동

- 상속이나 증여 시의 공제항목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의 경우 거의 매년 공제액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상하여 오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서 한번 이상 각종 공제에 대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을 한 바 있음
 - 미국의 통합세액공제·1년간 증여세 면세점, 일본의 각종 인적세액공제·1년간 증여세 면세점, 영국의 상속세 면제가액, 독일의 각종 친족공제 등의 사례에서 이러한 경향이 있었음
- 주요국들의 각종 공제항목의 인상 추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 간 증여 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상된 것 이외에는 10년 이상 변화가 없음
- 물가상승추세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제금액을 고정시킨다면 납세자의 실질적 공제혜택은 점차 감소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공제금액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변화를 결정하지 않는 한 물가상승수준에 맞추어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즉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공평한 상속·증여세 부과에 보다 부합될 것으로 판단됨

바. 상속 시 기부 활성화 방안

-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 시 공익법인 등에 출연재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음
- 영국의 경우 2012년부터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할 시에는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할인하여 적용하고 있음

- 기부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경감하여 적용하는 것임

-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부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공익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 외에 잔여 상속재산에 대한 인하된 상속세율 적용 등의 다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고선 · 송은주 · 유지선, 『외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현황 및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사례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1. 9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10
- 김완일 · 고경희, 『상속 · 증여세 실무편람』, 이텍스코리아, 2012
- 김유찬 · 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10
- 김진 · 송은주 · 정희선, 『주요국의 가업상속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0. 10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10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10
- 전병목 · 기은선 · 박임수 · 구자은, 『주요국의 상속 · 증여세 개편동향』,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7. 12
- CCH, United States Master Tax Guide 2012, CCH, 2012
- CCH, Japan Master Tax Guide 2010/11, CCH, 2010
- Sarah Laing, British Master Tax Guide 2011-12, CCH, 2011
- 미국 국세청, <http://www.irs.gov/>
- 영국 국세청, <http://hmrc.gov.uk/>
-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 독일 국세청, <http://www.fa-ravensburg.de/>
- 독일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http://www.destatis.de>
- IBFD, <http://www.ibfd.org/>
- 삼일인포마인, <http://www.samili.com/>

세법연구 12-08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2012년 12월 21일 인쇄

2012년 12월 27일 발행

저 자 원종학·이형민·홍성열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1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643-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